

#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1996. 12

박 종 철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김 영 윤 (정책연구실 실장)

이 우 영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發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요

약

1980년대 말 이후 북한이탈 주민이 수적으로 증가하고 출신 배경도 다양해짐에 따라 이들의 남한사회적응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였다. 북한이탈자들의 사회적응은 이들 자신을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남한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남북한 주민들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민족구성원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보고서는 북한이탈 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1. 북한이탈 주민 현황과 지원·관리제도

1996년 8월 현재 북한이탈 주민은 총 616명이며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고 북한체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1990년대 이후 이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북한이탈 동기가 체제불만에서 개인적 불만, 처벌 우려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탈출경로도 제3국을 통하는 등 다원화되고, 출신배경도 다양해지고 있다.

1980년대까지 북한이탈자들은 북한체제를 탈출하여 남한체제를 선택한 자유용사라는 관점에서 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동유럽에 유학중이던 북한 유학생과

별목공들의 귀순사태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우대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재정적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남한 주민들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문제가 대두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1993년 이후 북한이탈자들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었으며, 이들은 국가유공자가 아닌 생활보호대상자로 취급되었다. 그런데 북한이탈자들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위해 1996년 12월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자들에 단순한 경제적 지원보다는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한 자생력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 2. 통일전 동독 이주민의 서독적응 사례

동독 이주민의 서독사회 적응은 사회화와 통합이라는 개념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개인이 사회주변 환경과 사회구조속에 정상 편입되며 서독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범과 양식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독지역 주민의 서독 이주는 독일 패망이후 1961년 8월 베를린 장벽 설치전까지의 1단계, 베를린 장벽설치 이후 동서독 통일전 1989년 8월까지의 2단계, 그리고 1989년 동독의 국경개방조치 후 동서독간 「화폐·경제·사회통합」이 발효된 1990년 7월 1일까지의 3단계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본 사례연구는 1984년 동독정부에 의해 정식허가를 받고 서독으로 합법적으로 이주해온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동독 이주민의 서독으로의 이주 동기는 주로 동독지역 언론 자유의 결핍, 정치적 강제를 비롯하여 여행자유 제한 및 생계유지의 어려움에 기인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주와 함께 갖는 동독이주민의 서독에 대한 감정은 57%가 서독을 조국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주 후 서독 생활에 대한 인상은 긍정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구동독 이주민들의 서독사회에 대한 기대는 정치적으로는 별로 크지 않으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자유생활 및 노동에 대한 의욕은 동독에서 보다 훨씬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독일 정부의 구동독 이주민에 대한 수용태도는 구동독 이주민을 독일 국민에 상응하는 대우를 한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구동독 이주민의 사회적응은 이주민이 구동독 지역에서 견지했던 신분이나 직업·기술소지 여하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이주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사회적응에 성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독 이주민이 서독이주 직후 서독인의 소비생활에 대한 놀라움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이것이 이주민의 과소비 현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우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직장동료, 이웃, 인척 등은 이주민의 사회적 의사소통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사회적응 여부는 이들과 어떤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에 크게

달라지고 있다.

동독 이주민들의 정체성은 동독 이주민 스스로가 '개척자적 정신'을 가지고 사회생활에 임할 때 크게 제고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사회적응력 제고는 개인적인 만족과 행복감으로 직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인 고립을 경험하고 생에 대한 부정적 의미가 정체성에 대한 회의감으로 연결되고 있다.

### 3.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실태

본 연구는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1996년 6월~10월에 걸쳐 41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남한사회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북한이탈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남한사회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남한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구조적인 차원에서 남한사회의 빈부격차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능력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 보상을 신뢰하는 등 자본주의적 사회양식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자유와 기회보장과 같은 민주적 사회질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둘째, 북한이탈 주민들의 사회적응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들의 능력, 남한에서의 삶에 대한 자신감, 미래의 계획, 남한생

활에 대한 만족도, 북한 생활과의 비교, 남한생활에서의 어려움 및 그 원인, 그리고 직장생활 등에 대해서 물어 보았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북한이탈자들이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남한사회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자신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남한생활에서 경제적 여유가 향상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회적 대우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자녀교육이나 직장생활, 언어소통 등 일상생활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주위의 무관심 및 냉대,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은 남한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과 함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남한사회의 사회적 유대관계에서 소외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명하였다.

한편, 북한이탈 주민들의 남한사회 인지도 및 평가와 사회적응 실태에 관한 조사를 토대로 이들의 체제적응, 생활적응, 심리적응 정도를 분석하였다.

첫째, 북한이탈 주민들은 남한체제에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체제나 경제체제에 대한 인지도도 높은 편이고, 투표율도 전체 국민의 투표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남한사회의 빈부격차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개인적인 노력에 따라 성공이 좌우된다고 보고 있으며, 남한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으로 인식하는 등 남한의 자본주의현실에 대해서도 비교적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생활적응은 분야에 따라서 다르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남한사회의 가치관과 이념, 정치·경제제도 등을 완전히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남한사회와 일체감을 느끼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것은 북한체제에서 생활한 관습과 행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기 힘들며, 더구나 외면적으로는 잘 표출되지 않은 채, 잠재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심리적 불안과 고독감이다. 이러한 심리적응문제는 북한이탈자가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직장과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한 뒤에도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남아있게 된다.

#### 4.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 지원방안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법적·제도적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관련 부처간 업무조정 및 협조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통일원 산하에 「기획단」과 같은 전문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이탈자에 대한 보호관리시설의 세부적인 관리·운영방침,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관한 보완책, 민간단체의 참여유도,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강화 및 중앙정부와 지방단체간 역할분담,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 주민들의 사회적응을 위해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법률, 일상생활 예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적응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사회적응교육은 교육대상자들의 사회적 속성에 따라 학교교육 대상자와 학교교육 대상자가 아닌 자로 구분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성인들에 대해서는 북한에서의 직업을 고려하여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 그리고 전업주부 집단으로 분류하여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내용은 교육대상의 성격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와 특정 교육대상 집단에 필요한 교육으로 나누어서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자들의 자생력 증대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직업 교육 및 직업알선이 매우 중요하다. 직업교육은 일차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적성과 희망 직종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업교육이 취업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인력수급구조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교육은 직업에서 필요한 기술교육 이외에 남한의 노동규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업무처리과정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 주민들의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심리적 불안과 좌절감을 해소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북한이탈 주민들의 심리적응을 위해서 민간단체와 사회적 유대망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교단체와 인권단체, 사회봉사단체, 대학의 평생교육원, 청소년 대화의 광장 등 민간단체들

이 북한이탈자들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이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역할외에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북한이탈자들의 사회적응 및 심리상담을 위한 상설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에는 312개소에서 청소년문제와 노인문제 등을 상담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상담소시설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북한이탈자문제를 전담하는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 주민들에 대한 개별적인 사회복지 사업은 보호시설 내에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과 보호시설에서의 생활기간이 만료되어 정착지가 확보된 후 해당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상담을 담당하는 방안으로 나뉘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보호시설 내에서의 상담소 및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일정한 숫자의 북한이탈자들을 할당하여 이들에 대한 상설적인 상담체계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목 차

제 I 장 서 론 .....	1
1. 문제제기 .....	1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	3
제 II 장 북한이탈 주민 현황과 지원·관리제도 .....	6
1. 북한이탈 주민 현황 .....	6
2. 지원제도의 변천 .....	8
3. 북한이탈 주민 관리 현황 .....	17
제 III 장 통일전 동독 이주민의 서독사회적응 사례 .....	24
1. 개 관 .....	24
2. 동독 이주민의 서독사회 적응환경 .....	31
3. 동독 이주민의 서독사회 적응실태 .....	43
4. 요약 및 시사점 .....	56
제 IV 장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실태조사 .....	59
1. 북한이탈 주민의 남한사회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	61
2.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 실태 .....	73
3.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의 특성 .....	83

<b>제V장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 지원방안</b> .....	94
1. 법적·제도적 보완방안 .....	95
2. 사회적응교육 .....	97
3.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105
4. 심리적응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	111
<b>제VI장 결    론</b> .....	117
<b>참고문헌</b> .....	121
<b>부    록</b> .....	125

## <표목차>

<표 1> 연도별 북한이탈 주민의 현황 .....	6
<표 2> 통독 이주민 현황 .....	29
<표 3> 통독 주민의 서독으로의 이주 동기 .....	32
<표 4> 통독 주민의 이주후 서독에서의 첫인상 .....	33
<표 5> 통독 주민의 대규모 서독 이주에 대한 반응 .....	35
<표 6> 통독 이주민 정착지원 내역 .....	40
<표 7> 조사대상자의 특성 .....	60
<표 8> 남한체제에 대한 인지도 .....	62
<표 9> 남한사회의 정보획득원 .....	63
<표 10> 북한이탈 주민의 정치·사회참여도 .....	64
<표 11> 남한사회에의 기대 .....	65
<표 12> 남한사회에 대한 평가 .....	67
<표 13> 북한 주민과 비교한 남한 주민의 생활태도 .....	68
<표 14> 남북한 사회의 장단점 .....	70
<표 15> 통일을 위한 남한의 과제 .....	71
<표 16>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남한 사람의 태도 .....	72
<표 17> 개인의 능력 및 삶에 대한 평가, 미래계획, 생활만족도 ...	75

<표 18> 북한에서의 삶과 남한에서의 삶의 비교 .....	77
<표 19> 남한생활의 분야별 어려움 .....	78
<표 20> 남한생활이 어려운 이유 .....	78
<표 21> 직장 이전 횟수 및 직장에서의 애로사항 .....	80
<표 22> 남한생활에서 필요한 사항 .....	81
<표 23> 남한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 .....	82
<표 24> 남한 주민과의 대화시 어려웠던 경험과 그 원인 .....	83
<표 25> 각종 교육경험 .....	99
<표 26> 남한 정부의 대책에 대한 요망사항 .....	105

## 제 I 장 서 론

### 1. 문제제기

1980년대 말 이후 북한이탈 주민이 수적으로 증가하고 출신배경도 다양해짐에 따라 이들의 남한사회적응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북한이탈 주민 가운데 생활고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에 이르며, 경제적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북한으로 다시 가려다 사전에 발각된 사람도 있다.<sup>1)</sup>

북한이탈 주민의 문제는 우리에게 현실적·정책적으로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 북한이탈 주민이 수적으로 증가하고 이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실상 실제적인 측면에서 통일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시각도 있다. 통일이 서로 다른 체제에서 생활해 왔던 남북한 주민이 이질감을 해소하고 동일한 정치·경제 체제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북한이탈 주민의 남한사회 적응문제가 통일로 인해 겪게 될 실질적인 문제들을 미리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통일의 개념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단일 중앙정부하에 통일되는 정치적 통일에서부터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의 증진에 의해서 사실상의 공동체 형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통일이 궁극적인 정치제도적 통일이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공동체의 형성이든지 결국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 삶의 영

1) 「동아일보」, 1996. 2. 8; 「한겨레신문」, 1996. 2. 8.

역을 만드는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통합문제에 대해 기존의 제도적 통일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통합과 함께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이질감 해소 및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라는 측면에 보다 많은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북한이탈 주민의 남한사회 적응문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북한이탈 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북한이탈자 자신들을 위해서 중요하다. 북한이탈 주민이 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의 주변부에서 부적응자로 머무르는 것은 일차적으로 북한이탈자 자신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

둘째, 북한이탈 주민의 부적응은 남한사회에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들이 남한사회의 부적응자로 남아있을 경우 남한사회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으며,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이탈 주민의 부적응은 북한 주민 및 북한 집권층에게 남한에 대한 부정적 선전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 북한 집권층은 북한 이탈자들이 남한사회에서 적절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것을 선전할 수 있으며, 북한 주민들도 북한이탈 주민의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남한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남한주도의 통일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 주민의 남한사회적응은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남북한 주민들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민족구성원으로서의 민

족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북한이탈 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통일후 남북한 주민의 사회적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선행학습을 해 볼 수 있다.

다섯째, 북한이탈 주민의 남한사회 적응문제는 남한 주민들에게 통일이 수반하는 복잡한 문제와 통일후 겪게 될 사회통합의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이에 대한 남한 주민의 물질적·정신적 부담 및 자세에 대해서 자성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북한이탈 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첫째, 북한이탈 주민의 현황 및 이들에 대한 기존의 지원·관리제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통일 이전 동독출신 주민들의 서독사회 적응과정을 검토함으로써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서 이들의 사회적응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넷째,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이탈 주민의 남한사회적응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기존연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번째 범주의 연구는 이들의 사회적응실태 및 문제점 파

악을 위한 연구들이다. 이 가운데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의식변화 과정<sup>2)</sup>, 자유사회 적응과정<sup>3)</sup>, 탈북 귀순자의 의식구조 및 남한사회 적응의 애로사항<sup>4)</sup>, 현장 경험사례 연구<sup>5)</sup> 등 전반적인 남한사회 적응에 대한 연구가 있다. 그리고 탈북 노동자의 사회적응<sup>6)</sup>, 정신 의학적 측면의 적응연구<sup>7)</sup> 등 특정한 연구목적에 위한 연구들도 있다.

두번째 범주의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이탈 주민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기존 법·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대응책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들이다.<sup>8)</sup>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성과를 참조하되, 탈북 북한 주민의 사회적응을 체제적응, 생활적응, 심리적응이라는 3차원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 적응과정의 실태와 적응양상의 차이를 가져오는

- 
- 2) 통일원,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사회통제」, (서울: 통일원, 1994).
  - 3) 민병천, 「월남귀순자의 자유사회적응과정 실태조사」, (서울: 통일원, 1980).
  - 4) 통일연수원, 「탈북 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 (서울: 통일연수원, 1996).
  - 5) 고태우, 「월남귀순자 현장 경험사례」, 강광식 외, 「통일후유증 극복방안 연구: 민족사회적 가치체계의 융화」,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 6) 선한승, 「북한 탈북 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995).
  - 7) 민성길·전우택, 「사람의 통일: 정신의학적 접근」, 「통일사회로 가는 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원기념 심포지움 논문집, 1995.
  - 8) 이종훈, 「남한이주 북한동포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정비방향」, 「현안분석」, 제119호 (국회입법조사분석실, 1996. 4); 이종훈, 「탈북 북한 주민 체제적응 현황과 과제」,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민족통일연구소·해외민족연구소 공동주최 통일정책 대토론회, 1996. 11. 1; 제성호, 「북한 귀순자 보호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7권 1호 (1996 봄); 이정우·김형수, 「탈북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요인을 유형화하려고 하였다. 또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실태조사를 병행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적응 실태조사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총 4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자가 설문지를 중심으로 각 문항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화를 유도함으로써 답변자의 솔직한 응답을 얻고자 하였으며, 면접설문조사와 병행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 제II장 북한이탈 주민 현황과 지원·관리제도

### 1. 북한이탈 주민 현황

1996년 8월 현재 북한이탈 주민은 총 616명으로 1950년대까지 241명, 1960년대에 146명, 1970년대에 31명, 1980년대 64명, 1991년 이후 134명에 이르고 있다. 북한이탈 주민의 숫자는 한국전쟁 기간인 1950년대 초에 많이 발생했다가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고 북한체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199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북한이탈 주민의 현황

(1996. 8 현재)

연 도	인 원	누 계
1949~1950	18	18
1951~1960	223	241
1961~1970	146	387
1971~1980	31	418
1981~1990	64	482
1991~1996	134	616

북한이탈자들의 동기, 탈북경로, 배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탈북동기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1994년에 통일원에서

1960년대 이후 북한이탈 주민 2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시기별로 북한이탈자들의 동기가 변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에는 「남한체제와의 비교인식」 및 「체제불만」 등 이념적 이유에서 북한을 탈출한 경우가 72%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처우불만」, 「성분불량」, 「동반귀순」, 「처벌우려」 등 개인적인 이유에서 탈북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특히 1994년부터 북한이탈자의 수가 급증하였는데 그 동기는 생존권확보, 인권침해로부터의 탈출, 범법행위로 인한 처벌기피 등이다. 우선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변방지역의 주민들이 생존권확보를 위해 북한을 탈출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시베리아벌목장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중노동과 인권침해를 피해 탈출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또한 해외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거나 각종 의화별이사업에 종사하면서 외부세계의 정보에 접함으로써 북한체제에 염증을 느끼거나 업무과실 및 개인적 비리로 인해 탈출을 시도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둘째, 탈북경로도 다원화되었다. 1960년대에는 귀순자의 50%가 휴전선이나 해상을 통해 남한에 도달했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중국·러시아 등 제3국을 경유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증가하였다.

셋째, 북한이탈자들의 사회적 배경도 다원화되고 있다. 통일원의 조사에 의하면 북한이탈자들의 직업은 군인이 46명으로 가장 많고 당정원이 35명, 학생 25명, 벌목공 25명, 기술자 23명 순이었다.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군인보다 당정원과 벌목공, 학생의

1) 통일원,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사회통제」 (서울: 통일원, 1994).

비율이 증가하였다.<sup>2)</sup> 특히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농업과학원 연구사, 북송교포가족, 인민무력부 상좌, 유럽주재 외환딜러 등 상층계층의 탈북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1995년 말 북한이탈자 561명을 대상으로 한 남한에서의 직업조사에 의하면, 공무원 19명, 국영기업 13명, 은행 24명, 의사 4명, 군인 1명, 회사원 203명, 상업 44명 등으로 절반 이상은 안정된 직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253명은 막노동을 하거나 무직으로 이들은 월평균 40~80만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sup>3)</sup>

## 2. 지원제도의 변천

### 가. 1980년대까지의 지원제도

한국전쟁 이후 치열한 이념경쟁 및 체제경쟁 속에서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귀순한 사람들은 북한체제를 거부하고 자유세계의 품에 안긴 사람으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대우도 받았다. 1962년까지 월남귀순자는 특별한 법적 근거없이 군보안기관에서 관리·지원되었다.

1962년 4월 법률 제1053호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이 제정됨으로써 귀순자들은 이 법에 근거해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주무부서는 원호처였다. 이 당시 귀순자들은 1년 동안

2) 위의 책.

3) 「동아일보」, 1996. 2. 1.

조사를 받은 뒤 사회로 내보내졌다. 이 법에 의하면 귀순자는 정착수당으로 1급의 경우 100만원, 2급 70만원, 3급 50만원을 지급 받았다. 그리고 귀순자는 직장을 알선받고 국·공립주택 우선입주권을 배정받았으며, 양로 및 양육지원을 받았다. 이 법은 1974년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으로 개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동일했다.<sup>4)</sup>

북한이탈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1978년 12월 법률 제3156호로 「월남 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이 제정되면서 보다 체계화되었다. 이 법에 근거해 원호처가 귀순용사의 관리·지원업무를 담당하였으며, 1984년 정부조직개편에 의해 국가보훈처가 이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귀순용사는 신분 및 정보제공 공적에 따라 황금 1,900g에서부터 14,500g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제공받고 휴대장비의 유형에 따라 황금 10g부터 807,700g에 상당하는 특별보상금을 받았다.

그리고 귀순자는 군인 및 공무원에 특별임용될 수 있었으며, 15평 이상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또한 의료보호, 양로 및 양육지원을 받았으며, 본인·자녀를 포함하여 5인까지 직장을 알선받고 본인·배우자·자녀는 대학까지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준용하여 교육혜택을 받았다.

특히 기업체는 귀순자를 포함하여 국가보훈자를 정원의 5~10%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했기 때문에 국가보훈처가 귀순자

4) 윤여상, “남한의 귀순동포에 대한 정책연구,” 「영남정치학회보」, 제5호 (1995. 12), pp. 325~29.

의 희망기업을 조정하여 기업체에 의뢰할 경우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귀순자를 채용하였다. 귀순자의 학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이들이 희망하는 기업에 거의 100% 취직되었으며 이들은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고 월급을 수령하였다. 이러한 취업 및 교육혜택이 귀순자 자녀에까지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남한사회에 비교적 용이하게 적응할 수 있었다.

이처럼 「월남 귀순용사 특별보상법」에 의해 198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북한이탈자들은 귀순용사로 간주되어 국가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남한사회에 정착하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이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남한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적응에 성공했다고 보기 힘든 측면도 있다. 이들은 귀순용사 대우와 경제적 지원을 받는 대신 귀순자라는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들은 남한사회의 평범한 일원으로 적응했다기보다는 남한사회에서 특별대우를 받는 국외자로 남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나. 1990년대: 북한이탈 주민 증가와 지원규모 축소

1990년대에 접어들어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동유럽에 유학중이던 북한유학생들과 러시아에 파견된 별목공들의 귀순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북한이탈자에 대한 인식과 지원정책에 변화가 발생했다. 우선 북한이탈 주민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정부재정에 부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북한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이

들에 대한 우대정책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대두하였다. 이전까지 소규모로 발생하였던 북한이탈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생김에 따라 이들을 전체적으로 관리·지원해야 하는 종합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탈자들에게 과도한 대우를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기존의 북한이탈자 우대정책을 재고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1993년 6월 법률 제4568호로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sup>5)</sup>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은 기존의 북한이탈자에게 제공하던 물질적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사회복지적 혜택도 줄였다.

그리고 북한이탈자들이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독립적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취급됨에 따라 담당부서도 국가보훈처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전되었다.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자에 대한 정착금 및 보로금이 축소되었다. 정착금은 단독귀순자의 경우 월최저임금의 20배, 2인가족의 경우 30배, 3인 이상 가족의 경우 40배로 축소되었다. 가산금도 월최저금액의 60배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으며, 주거지원의 경우 주택용자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 알선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sup>6)</sup> 보로금은 휴대장비 및 정보가치에 따라 황금 10g부터 2,000g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sup>7)</sup>

5) 시행령은 1993년 12월 11일 제정되었으며, 1994년 9월 9일 개정되었다.

6)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시행령」, 제5조.

7)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시행령」, 제6조.

둘째, 주거지원이 제공되었다. 귀순북한동포의 연령, 세대구성과 거주희망지역 등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5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동 주택의 임대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건설되는 국민주택의 우선분양 또는 우선임대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8)</sup>

셋째, 취업알선에 대해서는 귀순자 자신에게만 국한되어 적용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 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에 취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기능직 공무원의 범위 안에서 우선 채용하도록 하였다.<sup>9)</sup>

넷째, 교육지원도 귀순자 본인에게 국한하여 적용되었다. 그리고 귀순자 및 그 가족이 의료보호 혜택과 취직상의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sup>10)</sup>

한편, 귀순자의 보호대상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보건복지부에 「귀순북한동포 보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기구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동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보호대상 여부, 보호대상에서의 제외 여부, 기타 귀순북한동포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임무를 띠었다. 그리고 귀순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정착을

8)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시행령」, 제7조.

9)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시행령」, 제8조.

10)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제10조, 제11조.

지원하기 위해 「귀순북한동포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11)</sup>

다. 1996년: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94년 말 이후 러시아별목공이 집단적으로 귀순하면서 한국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하였다. 그 결과 북한이탈자들은 체계적응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 없이 남한사회에 적응하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이탈자들에 대한 기존정책을 전면 검토하고 이들의 남한사회정착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물질적 지원을 위주로 하던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 체계적응을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과 직업훈련 등 북한 이탈자가 독자적인 능력으로 남한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두어졌다. 이런 점에서 개정 법안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되, 「북한이탈자의 보호관리기간 설정」,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실시」, 「경력 인정 및 특별임용」 등과 같이 독자적인 생활능력을 지닌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1996년 12월 제정된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상과 같은 입법취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전의 법안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11)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제13조, 제14조.

첫째, 탈북 주민의 보호관리업무가 통일원으로 일원화되었다.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국내정착에는 안전기획부, 내무부, 보건복지부, 통일원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다. 그동안 북한이탈자가 국내로 들어오기까지는 외무부, 귀순직후 보호관리는 안기부, 생활보호는 보건복지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은 교육부와 노동부, 사후관리는 경찰이 맡아왔다. 이처럼 분산되어있던 업무의 통합을 위해 통일원이 주무 부서가 되어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특히 통일원 산하에 「북한탈출주민 대책협의회」가 결성되어 이를 통해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여부 결정, 정착지원의 중지·종료 및 그 기간의 단축·연장에 관한 사항 등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이 협의·조정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12)</sup>

둘째,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정착시설을 마련하고 이들의 보호관리기간을 명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적응방안을 마련하였다. 북한이탈 주민은 정착지원시설에서 1년간, 거주지에서 2년간 보호를 받도록 되었다.<sup>13)</sup>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1997년부터 1998년까지 모두 99억원을 들여 북한이탈 주민을 보호하고 직업훈련을 시키기 위한 보호시설을 ‘한강이남, 천안이북’ 지역에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호시설은 부지 8천평, 건평 2천 5백평에 5백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이를 위해 1997년 예산에 우선 33억 5천만원을 배정해 부지매입 및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sup>14)</sup>

12)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6조.

13)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5조.

14) 「중앙일보」, 1996. 12. 7.

셋째, 북한이탈 주민들에게 남한사회의 기본규범과 행동규범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한 점은 개정 법안의 중요한 특징이다. 북한이탈자의 연령·성별 등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개인적 상황에 따라 재교육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sup>15)</sup>

넷째, 북한이탈 주민들의 국내정착을 위해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 및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북한의 공무원 및 군인이었던 자들은 직위·담당업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및 군인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게 되었다.<sup>16)</sup>

다섯째,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물질적 지원은 이전 법안과 대동소이하지만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기간 동안 보호금품을 지급받도록 한 것이 다른 점이다. 이외 북한이탈자의 주거지원과 정착금 및 보로금 지급, 교육지원, 의료보호, 생활보호 등의 법안은 이전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교육지원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의 경우 학비를 전액 면제하고 대학의 경우 2년 동안 학비를 면제하되, 사립대학의 경우 학비의 반액을 지원하고, 잔여기간

15)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5조, 제16조;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제12조.

16)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3조, 제14조, 제18조.

에 대해서는 학비 및 생활비를 장기용자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sup>17)</sup>

여섯째, 북한이탈자의 사회정착을 위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방안이 강구되었다. 이를 위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국공립 학교는 통일원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무원 정원의 일정한 범위 안에서 북한이탈자들을 우선 채용하도록 되었다. 그리고 북한이탈자를 채용하는 민간기업·기업체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북한이탈자채용을 장려하고 있다.<sup>18)</sup>

일곱째,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거주지로 전입한 북한 이탈자의 정착에 따른 애로사항은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개월마다 내무부 장관을 거쳐 통일원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북한이탈자의 생활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법무관 또는 사회복지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하도록 하였다.<sup>19)</sup>

여덟째, 이 법에 의한 모든 보호 및 정착지원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는 매년 이와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며, 부족액은 추가로 교부하거나 사후 정산하도록 하였다.<sup>20)</sup>

17)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18)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7조;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19)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22조, 제23조;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20)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29조.

아흡제, 북한이탈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sup>21)</sup>

### 3. 북한이탈 주민 관리 현황

북한이탈자들은 지금까지 남한에 도착하면 우선 국가안전기획부로 이송되어 신원조사를 포함한 심문을 받아왔다. 안기부 주관 하에 안기부·군·경찰의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합동심문반이 대체로 7~10일에 걸쳐 귀순자의 신원, 탈북동기와 경로, 북한에서의 행적 등을 조사하는 합동심문이 있게 된다.

합동심문이 끝난 후 북한이탈 주민들은 대부분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 국방부 정보사령부가 운영하는 시설(일명 대성공사)에 수용된다. 특별한 경우 안기부가 직접 귀순자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수용시설에 수용되지 않는 예외적 경우도 있다. 1993년 이전까지는 안기부에 2개월간 수용된 후 대성공사에서 10개월간 수용되었다. 1993년 이후 대체로 대성공사에서 6개월 동안 수용이 이루어지는데, 군인출신의 경우 정보사에 수용되며 조사기간이 일반인보다 길어진다.<sup>22)</sup>

북한이탈자들은 정보사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안기부, 기무사, 미8군 정보사, 육군 정보사, 검찰, 경찰 등 대개 6개 기관으로부터 다시 합동조사를 받게 된다. 이것은 주로 북한의 상황을 파악

21)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30조.

22) 송의호, “귀순자들의 내면세계, 그리고 남한사회 수업,” 「월간 중앙」 (1995. 1), pp. 423~32.

하고 관련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획득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 주민은 이 기간 동안 자신들이 정보획득원으로 취급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미군이 심문을 할 때는 북한에서 체득된 반미감정으로 인해 적개심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성공사에 있는 동안 외부정보와 접촉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은 언론·방송매체이다. 귀순자들은 2달째부터 신문을 한 가지 선택하여 볼 수 있고, 3개월이 되면 라디오 청취가 가능하며 4개월째부터 텔레비전 시청이 허용된다. 이들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로 소설류나 교양서적을 본다고 한다.

대성공사에 있는 기간 동안 주말에는 남산타워, 남대문시장, 백화점 등을 견학하고 영화감상을 하는 등 남한사회에 대한 견학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 비디오를 통해서 남북관계, 21세기의 전망과 한국의 대비, 자녀교육 등에 관한 교육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변호사를 초청하여 정부제도, 사법제도, 사법부의 역할 등 남한의 정치와 법제도에 관해서 교육을 받는다. 또한 대인관계, 관혼상제, 족보 보는 법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상식을 배운다. 그리고 여가 시간에는 체육관에서 라켓볼, 역기, 탁구 등을 하기도 한다.

대성공사에서 하는 산업시찰은 귀순자들이 남한의 경제상을 직접 실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평가된다. 귀순자들이 집단으로 산업시찰을 할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산업시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자동차공장, 중공업공장 등을 견학하고 독립기념관과 63빌딩, 인천 자유공원, 서울대공원, 국립묘지 등을 방문한다.

대성공사에서의 일정은 6시 기상, 간단한 운동과 세면, 7~8시

아침식사, 8~12시 교육, 12~1시 점심식사, 1~4시 교육, 4~5시 운동, 5~6시 휴식, 6~7시 저녁식사, 7~10시 자유시간, 10시 취침으로 되어 있다.

북한이탈 주민이 정보사에서 퇴소하면 남한사회의 국민이 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귀순자의 정착지원업무를 책임졌다. 보건복지부는 1993년 1월 보훈처로부터 귀순자보호문제를 이관받았으며, 생활보호과의 사무관과 주사 1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성공사에서의 수용기간이 만료되기 1달전 보건복지부에 보호신청이 제기된다. 원칙적으로 개인이 보호신청을 하게 되어 있지만 대개 국방부가 대행하며, 안기부 관리하에 있는 거물급 인사의 경우 안기부장 명의로 보건복지부에 보호신청이 행해진다. 보건복지부가 법원에 취적 허가신청을 한 후 취적되기까지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북한이탈 주민들은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 정착금으로 최저금액인 28만 5천 5백원의 30배(동거가족이 없는 3급의 경우 최소 700여 만원)~100배(동거가족 3인 이상인 1급의 경우 최대 2,850만원)의 범위 내에서 평균 700~1,500만원을 지급받는다. 그리고 동 시행령 제7조에 의해 가족수에 따라 9평 규모의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보증금으로 700~800만원을 제공받는다. 이렇게 볼 때, 가족이 없는 귀순자의 경우 정착금 및 임대보증금을 합해 1,500~1,700만원 정도를 지급받게 된다. 그리고 동반가족이 있을 경우 이를 가산한 추가금액이 지원된다.<sup>23)</sup>

23) 제성호, 「북한귀순자 보호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7권 1호 (1996 봄), pp. 71~72.

대성공사를 나오면 그때부터 2년 동안 경찰관이 보호·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 이탈자들의 관리업무는 일명 「무궁화착근사업」으로 불리우고 있다. 경찰이 북한 이탈자들의 적응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북한 이탈자들이 기본적으로 보안업무 차원에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이 전향간첩들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以南化教育」을 담당해 온 것도 이들이 북한 이탈자들의 보호·관리에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북한 이탈자 관리업무를 전담하였는데 대공형사 600~700명중 100여 명이 북한 이탈자 업무를 담당하여 업무가 과중하였기 때문에 경기도 경찰도 귀순자업무를 분담하였다. 그러나 북한으로 재입북을 기도하였던 김형덕사건<sup>24)</sup> 이후 서울경찰청이 일원적으로 북한이탈자들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서의 대공담당부서인 보안 1계 소속 경찰 2명이 귀순자 1명을 담당하는데 원칙적으로 24시간 시내안내와 생활지도 등 북한이탈자의 모든 생활을 보호·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이탈자들은 매일 그의 활동을 담당경찰에게 보고해야 하며, 강연을 다닐 때 경찰과 동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들의 사소한 태도와 행동, 안내 등이 귀순자들의 사회적응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담당 경찰들이 대공업무를 담당하는 보안 1계 소속이며 귀순자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사전지식도 지니지 않고 경찰 개개인의 성향이나 태도도 천차만별이어서 북한 이탈자들의 사회적응에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다.

24) 김형덕은 1994년 9월 귀순했다가 중국화물선을 이용 중국으로 재입북하려다가 1996년 2월 발각되었다. 「조선일보」, 1996. 2. 11.

탈북 북한 이탈자들은 취직을 획득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됨에 따라 법적으로 남한의 정식 국민이 된다. 그 다음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에 의해 주택지원, 취업 알선 신청, 의료보험 신청 등 실제로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이 뒤따른다.

우선 주택지원 신청은 서울시를 통해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신청하게 된다. 필요한 가재도구는 관련 회사들이 기증하거나 담당 경찰들이 개인적인 연줄을 통해 기부를 알선하기도 한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취업 문제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1993년 이전까지는 취업을 의뢰받은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북한 이탈자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1993년 이후 경찰들이 개인적인 연줄을 통해 관할 지역 내의 기업체에 취직을 부탁하고 기업체들의 취업 거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대두하고 있다. 기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탈자들의 취업부탁은 달가운 일이 아니다. 일부 전문직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북한이탈자 대부분이 업무에 필요한 사무능력을 결여하고 있으며, 남한사회의 실정에 어두울 뿐만 아니라, 잦은 외부강연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근무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기업체측에서 볼 때 이들은 불필요한 인력으로 간주된다.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교육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1980년대까지는 본인의 경력이나 능력, 적성에 관계없이 희망직종에 우선적으로 취직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직업교육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러나 1994년 별목공들이 귀순하면서 이들의 직장알선이 중요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부분적으로 직업교육이 실시되었다.

1994년 일반 직업훈련원인 「정수직업훈련원」에서 1년과정으로 전기, 자동차, 선반 등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자에 대한 직업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들은 10개월 교육을 받은 뒤 2개월 동안 해당 기업체에서 적응교육을 받았는데 2차에 걸쳐 주로 30대 중반의 별목공 출신 18명은 남북한의 교육제도 차이로 인해 기술교육이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이 훈련원 내에 집단거주하는 24시간 동안 경찰관이 정문에서 보초를 서고 사감들이 엄격하게 일상행동을 통제함에 따라 반발이 심했다. 이들은 전체주의사회인 북한이 싫어서 남한으로 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집단생활을 해야 하고 외출자유도 없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 그리고 각자의 배경이나 적성, 희망에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의 기술교육을 받아야 되는 점에 대해서도 반대가 많았다. 정수직업훈련원측도 이들을 교육시키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합숙훈련시키기 않기로 하였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정수직업훈련원의 교육은 1994년 1회로 중단되었다. 직업훈련을 받은 18명은 훈련원 입소당시부터 삼성, 대우 등과 취업이 약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한의사 출신 1명을 제외하고 전원 취업하였다.

한편, 순복음교회 산하 엘림선교원에서 직업교육이 실시되었는데, 여기에는 1년 동안의 교육기간 동안 10여 명이 신청했으나 교육훈련원 내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일요일에만 외출이 허가되며 금주, 금연, 규칙생활, 기독교 학습 등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입소자들의 반발이 심했다. 그리고 직업교육 내용이 자동차 수리, 목공, 컴퓨터 등 단순 기술직에 한정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다. 또한 1996년 3월부터 6개월 야간과정으로 고덕동에 있는 「서울시립종합직업학교」의 실업자 직업훈련과정에 북한이탈 주

민 6명이 신청하였는데, 이 가운데 1명은 적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중단하였다.

북한 이탈자들의 친목단체로 「승의동지회」와 「통의동지회」가 있다. 「승의동지회」는 1981년 창설되었으며 일반 귀순자 약 5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승의동지회」는 2년마다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가 없는 해에는 회원 전체가 보통 3박 4일의 산업시찰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예산부족으로 이를 중단하였다. 회장단은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승의동지회」의 예산은 「귀순북한동포법」 14조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인 「귀순북한동포후원회」에 의해서 지원된다. 후원회는 기금 5억 3천만원의 이자수입으로 사무국장 월급과 사무실 유지비를 지원하고 회원들의 생일날 2~3만원씩 제공했으나 최근에는 이것도 중단하였다. 그리고 후원회는 고령실업자 20명에게 월 5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직업을 알선하고 정년후 임시직 알선을 주선하기도 한다.

그리고 「통의동지회」는 군인출신 및 간첩활동을 하다 전향한 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기무사의 관리를 받는다. 이 외에 북한 이탈주민들의 사적 모임으로 동구유학생 중심으로 결성된 「동유회」, 1990년대 귀순한 사람들의 일부가 결성한 「나라사랑모임회」, 「한백회」, 이들의 「집단거주지역인 가양동의 친목회」 등이 결성되어 있다.<sup>25)</sup>

25) 승의동지회 회장 오선석 및 부회장 김용철 면담내용, 1996. 3. 20.

## 제Ⅲ장 통일전 동독 이주민의 서독사회적응 사례

### 1. 개 관

#### 가. 이주민의 형태별 구분

구동독지역의 이주민은 그 이주형태에 따라 ① 합법 이주민(Übersiedler), ② 탈출 이주민(Flüchtlinge), ③ 해외지역으로부터의 귀향자(Aussiedler)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합법 이주민(Übersiedler)은 구동독 정부의 허가를 득해 서독으로 이주한 자들이다. 구동독 정부가 철저한 경제적 이해 관계에 따라 구서독지역으로 이주를 허가한 자들이 주를 이룬다. 이들은 구서독에 가족이 있는 경우로 극히 제한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거나 나이가 많은 동독인들로서 더 이상 구동독 경제에 이바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 사람들이다. 그 밖에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로는 정치범으로 동독에 구금되어 있다가 서독 정부가 일정액의 석방료를 지불하고 구서독으로 이주시킨 사람들이 있다.<sup>1)</sup>

둘째, 탈출 이주민(Flüchtlinge)은 구동독 정부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구동독을 탈출한 사람들이다. 동서독이 분단된 직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기 전까지 매년

1) 1963년부터 통일전까지 구서독 정부가 석방시킨 정치범은 총 3만 1,755 명에 달하며 이를 위해 지불한 금액은 약 34억마르크가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장벽 설치 이후부터는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전까지 매년 평균 2만명에 가까운 동독 주민이 동독을 탈출했다.

탈출 이주민 속에는 구동독에서 구서독 여행허가를 받고 서독을 방문한 후에 구동독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독에 머문 사람들의 수도 포함된다.

셋째, 해외지역으로부터의 귀향자(Aussiedler)에 속하는 사람들은 독일국적을 가진 사람들로써 구소련 지역을 포함한 동유럽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독일로 귀환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독일민족이라는 이유로 구금, 억류 또는 강제납치된 자들로서 1945년 5월 8일 이후 석방된 자들이거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인 출신의 전쟁포로로서 1946년 12월 31일 석방된 자 및 그들의 자녀들을 말한다. 이들은 서독의 귀향자법 또는 전쟁포로 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다. 특히 구소련의 붕괴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에 따라 매년 20만명 이상의 실향민들이 독일로 이주하고 있어 통독 이후 독일 정부가 당면한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어 있는 실정이다.

#### 나. 이주민의 규모 및 시기별 구분

동독지역 주민의 서독지역 이주는 그 역사적 환경변화와 규모의 증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sup>2)</sup> 첫번째 단계는 독일의 패망 이후 1961년 8월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대규모 탈출이 발생한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두번째 단계는 베를린 장벽 설치 이후 동서독이 통일 되기 전 1989년 8월 동독 주민의 대규모 탈출이 발생하기 이전까지의 기간을 들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1984년 동독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이주민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던 기간도 포함하고 있다.<sup>3)</sup> 세번째 단계는 1989년 동독의 국경개방 조치가 이루어지고 동서독간 「화폐·경제·사회통합」이 발효된 1990년 7월 1일 이전까지의 기간으로 동독 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서독지역으로의 대규모 이주가 발생한 시기를 말한다.

첫번째 단계인 베를린 장벽 설치 이전(1961)까지는 동독측의 내독간 국경통행 제한 조치(1953)가 이루어졌으며 국경차단 조치가 시행되었다. 동독은 탈출자 방지를 위해 총기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냉전기 동안 내독간 국경은 완전히 차단되었기 때문에 4대국 합의에 의해 비교적 왕래가 자유로웠던 베를린을 이용하여 탈출·피난하였다. 이 기간 동안 탈출·이주의 주요 동기는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데 따른 정치적인 원인과 동독내 강제집단화 및 국유화에 반발하는 경제적인 원인이 주를 이루었다.

2) 이정우·김형수, 「탈북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 (서울: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1996), pp. 54~57 참조.

3) 구서독지역에서 이주자들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여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4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84년 구동독 정부는 최초로 구서독으로의 여행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그 동안 축적되어 온 신청인들에게 한꺼번에 여행 허가를 발급하였다. 다시 말해 그동안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만 허용해 왔던 구동독 정부의 구서독 여행허가 기준이 젊은 층으로도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표 2>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꺼번에 많은 이주자들이 구서독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이들의 처리 및 사회적응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테마가 되었다.

총 탈출자는 약 340만명에 달했다.

두번째 단계인 베를린장벽 설치 이후 1989년 여름까지의 이주민 현황을 보면, 먼저 베를린 장벽 및 내독간 국경의 완전 차단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을 고려하여 동독 정부는 1962년 제한적인 방법을 통해 합법이주 정책을 마련하였다. 즉, 연금수령(여: 60세, 남: 65세) 이상의 경제적 무능력자와 서독 정부와 비밀거래로 석방된 정치범을 주 대상으로 이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조약 체결 이후부터는 내독간 국경에 더 많은 차단장치를 설치하였는 바, 전자감응 자동발사기 설치 및 지뢰매설 등이 이에 속한다. 그 밖에도 동독은 1982년에 국경법을 제정하여 탈출자에 대한 총기사용을 법제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독 국경 및 베를린 장벽을 통해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하는 자가 많았으며, 동독 주민들이 비교적 여행이 용이했던 제3국인 동구권 국가 소재 서독 공관을 통해 탈출하는 자도 늘어났다. 또한 동독 정부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아 서독지역을 방문중 서독에 체류하거나 동 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농성·점거를 통해 동독 정부로부터 합법이주를 허용 받은 자들도 있었다. 이들의 이주 동기는 주로 정치적인 억압이나 여행가능성 제한에 따른 반발의 형태이거나 생필품의 부족,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음을 알고 그 대안을 찾기 위한 동기가 주를 이루었다. 이 기간 동안 탈출한 자의 수는 약 62만명에 달했다.

세번째 단계인 1989년 여름 이후 동서독간 「화폐·경제·사회통합조약」의 발효(1990) 이전까지의 동독 주민의 서독 이주 상황은 먼저 소련의 브레즈네프 독트린 폐기 이후 유리한 국제환경을 이

용한 동독 주민의 대규모 탈출·피난이 이루어졌다. 동구권 국가로의 휴가를 이용한 대규모 탈출이 발단이 되어 체코·폴란드·헝가리 주재 서독대사관을 점거하고 서독으로 이주시켜 줄 것을 요구하거나 동베를린 주재 서독 상주대표부를 점거하여 서독으로의 이주를 요망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11월 이후부터는 동독 주민의 자유로운 이주가 가능해졌는데, 위 기간 동안 이주는 주로 동독지도부의 개혁·개방 거부에 대한 집단적 저항에 따른 것이었으며,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는 동서독 지역간 신속한 생활수준의 평준화를 기대하거나 동독 지역내 경제·사회적 불안에 주로 기인하였다. 총 탈출자는 1989년 34만명에 달했으며 1990년에는 24만명에 육박했다. 동서독이 통일된 지 이미 6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구동독 주민의 구서독 이주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sup>4)</sup>

---

4) 이는 국내 거주지 변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장에서의 연구대상에서는 제외된다.

&lt;표 2&gt; 통독 이주민 현황

(단위: 명)

기 간	이주민 현황			연평균 규모
	계	합법이주민	탈주민	
종전 이후~'61.8.12. (제1단계)	3,419,042	-	3,419,042	201,120
'61.8.13~'88.12 <sup>1)</sup> (제2단계)	616,060	381,376	234,684	22,002
'89~'90.6.30 (제3단계)	582,238	101,947	480,291 <sup>1)</sup>	388,159
계	4,617,340	483,323	4,134,017	100,377

주: 1) 제2단계는 '89년 8월 이전까지이나 편의상 '88년 12월까지로 잡았음.

자료: 주독대사관, 「서독의 동독인 수용·지원정책」, 1990.

\_\_\_\_\_, 「과거 동서독 국경을 통한 탈출·이주민제」, 1993.

다. 서독사회적응의 개념: 사회화(socialization)와 통합(integration)

동독 이주민의 서독사회적응은 동독과 서독 사회가 지난 40년 동안 이질적인 사회발전을 거듭하여 왔기 때문에 실제 서독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적응을 위한 방법적 당위성을 찾고 있다.<sup>5)</sup>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회적응은 사회화(socialization)와 통합(integration)이라는 개념에서 파악되고 있다.

「사회화」란 인간으로서의 개인이 사회 주변의 환경과 사회라는

5) Volker Ronge, *Von drüben nach hüben DDR-Bürger im Westen*, Verlag 84 Hartmann + Petit Wuppertal 1985, p. 51ff.

구조 속에 정상적으로 편입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통합」은 인간이 이질적이거나 이국적인 사회 환경에 일원으로 흡수·편입됨을 말한다.<sup>6)</sup> 여기서 이질적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인종적인 문제이거나 인종적인 문제와 결부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언어를 포함한 문화적인 것에 의한 지배를 받는 것까지도 포함된다.

통합은 일반적으로 사회화보다는 보다 나쁜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 바꾸어 말해 사회생활과 행동에 필요한 규범과 양식을 배워야 하는 새로운 혹은 두번째의 사회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규범과 양식을 비교적 단시간 내에 배워야 하며, 지금까지 배웠거나 살아왔던 양태에 反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통합과정은 이전에 살았던 사회 구조와 문화, 사회적인 역동성과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려운 것으로 지적된다.

독일에서는 이주민의 사회적인 동화와 관련된 문제는 외국 노동자(Gastarbeiter)나 망명자(Asylanten)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문제로 취급하여 논의되고 있다. 또한 통합과 사회화의 정도 면에서 다르지만 전후 동유럽 국가로부터 이주해 온 독일 국적 탈출자에도 적용되는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고찰할 때 동독 주민의 서독으로의 이주는 언어나 전통의 동질성 측면에서 다른 외국인의 독일로의 이민이나 망명 등과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독일 국가 사이에는 지난 40년 이상 동안 형성된 사회 질서와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

6) 위의 책.

## 2. 동독 이주민의 서독사회 적응환경

### 가. 동독 이주민의 서독사회적응 여건

#### (1) 이주동기

동독 주민의 서독으로의 이주동기를 살펴보면 앞서 간헐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기 및 단계별로 ① 동독지역의 공산화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과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반발 등 정치적인 사유 그리고 국유화 조치에 따른 사유재산의 몰수에 대한 반발 등 경제적인 이유, ② 여행 등 거주이전 제한과 동독지역에 대한 희망감 상실 및 기초 생필품 부족 및 열악 상태, ③ 동독 정치개혁 부진에 대한 불만과 여행의 자유와 민주화 욕구, 경제·사회적 불안정에 대한 불만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7)</sup>

1984년 동독 주민의 합법적 서독 이주가 이루어졌을 당시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Ronge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독 주민의 서독으로의 이주는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언론자유, 결핍, 정치적 강제를 비롯하여 여행자유, 제한 및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 1989년 이후 화폐·경제·사회통합시까지 불과 1년 반 동안 58만명 가량의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허가를 받지 않은 탈출자가 82.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이들 중 18세 이상 39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이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lt;표 3&gt; 동독 주민의 서독으로의 이주 동기

이주배경	전체 구성비 (복수 응답 가능)
언론 자유의 제한	71
정치적인 압박	66
여행자유 제한	56
생계유지의 어려움	46
미래전망의 불확실	45
가족 및 친지 상봉	36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28
직업발전가능성 제한	21

자 료: Volker Ronge, *op. cit.*, p. 18.

## (2) 동독 이주민의 대서독 정서

이주와 함께 갖게 되는 동독 이주민의 서독에 대한 감정을 살펴보면 39%의 이주민은 서독으로 이주하는 순간 타국으로 생각한 반면, 57%는 조국으로 생각하고 있다.

타국으로 느끼는 감정은 비교적 젊은 층과 서독내 친인척이 없는 계층의 이주민에게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젊은 층이 겪는 서독에 대한 이질감은 단기간 내에 해소될 수 있는 감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밖에 서독 생활을 통해 직접적으로 겪는 사회접촉이나 소비 생활 및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 특히 광고를 비롯한 대중생활 등

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을 크게 능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동독 주민의 이주후 서독에서의 첫인상

상 황	긍정적 인상(%)	부정적 인상(%)	응답 무
직접적인 사회접촉	41.4	6.7	51.9
소비, 경제생활, 광고	34.1	6.9	59.0
공중생활	35.4	10.3	54.3
행정관서 및 관료주의	42.9	22.4	34.7
이주민 수용처	23.6	10.3	66.1

자 료: Volker Ronge, *op. cit.*, p. 26.

### (3) 동독 이주민의 서독사회에 대한 기대

위와 같은 이주동기에 따른 서독에 대한 동독 이주민의 기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치적인 기대는 별로 크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와 같은 기대가 무리라는 것을 쉽게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동독 이주민이 기대하는 것은 사회주의 방식에 의한 생활이 아닌, 적어도 동독에서보다는 훨씬 큰 정도로 의사결정이 개인 스스로 이루어지는 자유생활과 함께 그와 같은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사회이다. 여기에는 첫째, 직업과 노동이 이루어지고 둘째,

주거문제가 해결되며 셋째, 사회적인 대인관계(친구 및 친척 등)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과 관련하여 구직의 가능성에 있어서 동독 이주민의 70% 이상은 서독이 동독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서독에서의 체류와 서독 생활이 경과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견해로 바뀌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는 서독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이주민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에 따른 노동의욕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동독 이주민에 대한 서독 주민의 입장 및 정부 지원

##### (1) 서독 주민의 동독 주민 이주에 대한 반응

1984년 4월~5월 14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설문 조사 당시 대규모 동독 이주민의 발생이 언론 매체에 보도된 상황이었다.

&lt;표 5&gt; 동독 주민의 대규모 서독 이주에 대한 반응

반 응	전체 설문자 구성비(%)
좋은 현상이다	18
좋을 수도 있고 나쁜 현상일 수도 있다	46
좋을 것이 별로 없다	22
나에게는 마찬가지다	6
별 의견이 없다	7

자 료: Volker Ronge, *op. cit.*, p. 33.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문 대상자의 과반수가 동독 주민의 이주에 대해 양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긍정적인 입장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주민에 대한 반응을 연령별 계층으로 나누어 볼 경우,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은 계층에서 연령이 높은 계층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높게 나타내고 있다.<sup>8)</sup> 그리고 서독사람으로 취업자와 실업자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경우에는 실업자가 동독 주민의 이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9)</sup>

동독 주민의 서독으로의 이주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다음과 같

8) V. Ronge, *op. cit.*, p. 34.

9) V. Ronge, *op. cit.*, p. 35.

은 서독인의 표현을 수렴하여 대신할 수 있다. 첫째, 동독 주민은 전쟁 결과에 대한 부담이 서독 주민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 주민은 어떤 경우에라도 서독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둘째, 동독 주민의 서독 이주에 있어 국가 지원만으로는 동독 주민이 무엇인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서독 주민 모두가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 동독 이주민은 부지런하고 잘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서독의 직업생활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다음과 같은 견해에서 비롯되고 있다. 첫째, 동독 이주민은 오로지 서독 주민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뿐이다. 둘째, 동독 이주민들은 서독사회에 적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동독인의 서독 이주는 앞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셋째, 동독 이주민들 중에는 동독 정부의 첩자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총체적으로 말해, 동독 이주민의 서독사회로의 통합은 80%의 설문대상자가 전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 (2) 서독 정부의 동독 이주민에 대한 조치<sup>11)</sup> 및 동화대책

10) V. Ronge, pp. 37~38.

11)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Information zur politischen Bildung - Aussiedler*, Franzis - Verlag GmbH 1991. Bonn; Dieter Voigt und Lothar Mertens, ed., *Minderheiten in und Übersiedler aus der DDR*, Schriftenreihe der Gesellschaft für Deutschland Forschung Band 34. Duncker & Humboldt. 1992, Berlin;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Familie, Frauen und Gesundheit*, Bayerische Sozialpolitik München, 1993 참조.

## (가) 서독 정부의 이주민 수용조치

서독 정부의 합법 이주민(Übersiedler)과 탈출 이주민(Flüchtlinge) 및 해외지역으로부터의 귀향자(Aussiedler)나 실향민(Vertriebene)에 대한 서독사회로의 동화대책(Eingliederungsmaßnahmen)은 이들이 서독 생활에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마찰없이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연방내무성을 비롯하여 연방 가족 및 노인성과 주정부가 동원되어 실질적인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우선 독일 정부는 구동독 또는 동구권 등 기존의 거주지를 떠나 독일로 이주해 오거나 이주를 희망하는 독일 민족을 별도의 특별한 국적취득절차 없이 수용하고 독일 국민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의 수용 및 정착지원은 단순히 난민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동포애적인 차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은 첫째, 이주민의 서독사회에 대한 적응력 제고와 둘째, 보상이라는 원칙하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실시되었다.<sup>12)</sup> 먼저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규정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이주자들에 대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알선 등을 통해 자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취업시까지의 최저생계비를 매달 지급함으로써 서독으로의 이주후 생활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주민의 수용 및 정착지원 부서는 연방내무성이며 이주민 처리와 관련된 실제적인 업무는 연방행정청(Bundesverwaltungsamt)에

12) 이정우·김형수, 「탈북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 p. 50.

서 맡고 있다. 연방행정청에서는 이주신청서의 심사 및 허가서 발급, 이주민의 입국절차결정, 수용소 건립 및 관리를 비롯하여 이주민의 지역별 분할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연방행정청은 국경 부근에 4개의 연방수용소를 건립하여 이주민의 등록, 간이 건강 진단, 숙식제공 및 독일사회에 대한 홍보물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주민으로 등록된 자에게는 수용증 발급과 함께 환영금으로 일인당 200마르크가 지급되며 별도 수용주의 재원으로 가장에게는 30마르크, 피부양자 1인당 15마르크씩 지급하고 있다.

이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입국 후 처음 2~3일간은 연방수용소에서 체류한 후 정부 중앙수용소로 분산 수용된다. 주정부로의 분산수용은 주정부의 인구규모 및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고 개별 이주자의 연고, 희망 및 정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수를 할당한다. 연방수용소에서 주중앙수용소까지의 여행비와 이삿짐 운송비는 연방정부의 재원으로 충당된다. 주정부 수용소에서는 2~3일간 체류한 후 다시 지역별로 분산수용되는데, 개별주택이 마련되기 전까지 임시거주지에서 약 1~2년간 생활을 하게 된다.

#### (나) 이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이주민의 적응을 위해 서독 정부는 각종 사회보장적 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거지원 및 소득지원을 비롯하여 실업급여 제공, 재외국민 연금법에 의한 연금제공 및 의료보호, 재해보호, 공공부조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독일 정부의 이와 같은 이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은 기 언급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인도적이고 동포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단기적이며 초기정책지원을 통해 이주민이 향후 스스로 성공적인 자립정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밖에도 이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서독의 사회보장제도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사회보장체계가 동독 이주민을 사회적으로 흡수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동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실시하지는 않고, 민간단체가 독자적으로 자문, 세미나 및 기타 동화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고 국가는 이들 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lt;표 6&gt; 동독 이주민 정착지원 내역

거주지 마련	임시수용소 주택소개 복지주택 우선 입주권 제공	친인척이나 기타 연고를 통한 주택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주택건설법 제25조에 따라 동독출신 이주민에게 5년 동안 주택입주상의 혜택을 줌
생활상담과 후견	새로운 생활환경 소개	
생활용품, 가구구입을 위한 저리 융자	독신자 2인 이상 가족 기본금 기타 가족 1인당	3,000DM 4,000DM 1,000DM 최고액 10,000DM
학력인정	동독 취득 학교졸업증명서나 직업교육 자격증명서 인정	연방실향민법(Bundesvertriebenengesetz: BVFG)
교육촉진금 지원	교육기간 동안의 생활비보조	연방교육촉진법 (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대졸자 사회진출 보조	직업정착지원	학업추가 이수시 장학금 지원
자녀 수당	자녀 수에 따라 양육비 지급	연방자녀수당법 (Bundeskindergeldgesetz)
사회복지 지원	의료보호, 질병급부 연금보험 실업보험 실업수당 산재보험 전쟁희생자 원호 사회부조	질병보험법에 따른 질병보험 급부금 수혜 연금법에 따른 개별적 급부금 수혜(동독, 동베를린에서의 기여금 불입기간 포함 산정, 자영업자의 기여금 추가 납입시 연금대상에 포함) 동독에서의 실직기간, 정치범으로서 구류기간, 자영업기간도 취업기간에 포함 산정 단체협약임금의 63% 서독 보험법에 따른 급부제공 연방원호법(Bundesversorgungsgesetz)에 의한 원호 생계비 지원, 주택임대료 지원, 난방비 보조금, 의복과 가구에 대한 보조금

동화대책에 참여한 민간단체로는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카리타스(Karitas Vand), 신교교회(Diakonisches Werk), 근로자 복지단체, 독일평등복지협회, 신교 교회청 정주민 사업단, 독일 카톨릭 난민 협의회 및 아커만 협회(Ackermann-Gemeinde) 등이 있었다.

실향민 및 피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에는 실향민 연맹, 실향 농민 협회, 유럽지역 독일 청소년단, 중부 독일인 중앙협의회, 중·동부독일인 중앙협의회, 구정치범 지원재단, 구정치범 동우회, 스탈린주의 희생자 연합 등이 있었다. 이들의 동화 프로그램은 연방 및 주정부 정치교육센터를 통해 이루어졌다.

동화대책의 내용은 주로 이주민들의 주거·직장·교육 등 3가지 문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동구 및 동구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한, 다시 말해 소위 사상 전환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이데올로기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주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동독 출신 이주민들은 서독의 매스미디어와 동서독간 친지 방문, 전화, 우편교류 등을 통해서 서독의 체제와 사회에 대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사상교육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측면도 있다. 다만 연방주의 정치·행정기구 및 그 기능 등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연방 및 주정부 기구를 통한 정치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서독 정부는 서독체제의 장점을 활용하여 스스로 자연스럽게 체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현지 주민과의 접촉과 파트너 개념을 도입하여 이주민 동화대책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각종 동화대책 주관 단체들은 시민대학(Volkshochschule)의 프로그램에 이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시민대학은 이들이 현지 주민과 만나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제공되었으며, 시민대학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저녁시간에 국민학교나 고등학교의 강의실을 이용하여 현지 주민들도 참석할 가운데 대화의 광장(Stammtisch)을 운용하여 이주민의 역사, 이주동기 및 상황, 독일 현지생활 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서는 먼저 주제발표를 하고 질문과 토론을 하거나 주제에 대한 영화나 비디오를 보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민대학에 참가하는 현지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같이 야외로 소풍을 가거나, 연방의회, 박물관 등을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이주민들이 체육 동호인 단체(Sportsverein)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접촉을 통해 자기 발전과 성취욕을 북돋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방 및 주정치교육센터와 동화대책 담당 단체들이 이주민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아 주말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세미나에는 이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만 선별하여 참가하도록 한 것은 예산사정도 있었지만 참석할 사람이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가 듣고 알게 된 것을 전파하는 자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 때문이기도 하였다. 세미나의 주제는 일반적으로

시민사회의 기능과 역할, 학교와 교육, 직장생활, 법률과 경제문제, 보건, 교화와 종교, 휴가와 여가선용을 비롯하여 교육과 문화 등 다양하였다.

### 3. 동독 이주민의 서독사회 적응실태<sup>13)</sup>

#### 가. 개 관

13) 동독 이주민의 서독사회 적응에 대해서는 Volker Ronge가 1984년 동독 주민의 대규모 이주가 발생한 직후 집필한 「Von drüben nach hüben」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Ronge는 1984년 여름 1984년 초 구동독지역으로부터 이주한 동독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30명에 대해서는 일관성있는 면접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면접조사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청에 등록된 이주민을 대상으로 표본집단을 선정하고 사회복지청의 이름으로 인터뷰에 응해줄 것을 각 이주민에게 요청한 후, 이중 응답한 사람중 30명의 주소를 사회복지청으로부터 얻어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의 성별 구성은 25명이 남자이고 5명이 여자였으나 성별 불균형은 절대적인 의미가 없었다. 왜냐하면 인터뷰의 대상이 가계나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인터뷰 과정에서 한 가족의 가장이 아내가 참석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교육정도는 30% 이상이 대학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자의 73%에 해당하는 22명이 동독을 떠나기전 서독 지역에 친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구조	사람수	%	연령별 구조	사람수	%
독신남자	7	23	20세 이상~25세 미만	2	7
부부(자식무)	3	10	25세 이상~30세 미만	2	7
부부(자식 1)	10	33	30세 이상~35세 미만	5	17
부부(자식 2)	5	17	35세 이상~40세 미만	6	20
부부(자식 3)	4	13	40세 이상~45세 미만	8	27
독신여자(자식 4)	1	3	45세 이상~50세 미만	3	7
	30	100	50세 이상~55세 미만	1	3
			55세 이상~60세 미만	2	7
			60세 이상~65세 미만	1	3
				30	100

이주민의 서독사회에의 적응의 성공여부는 일반적으로 이주민의 적응여부에 대한 측정을 언제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또한 동화를 위한 조건, 예를 들어 연령, 성별, 습득한 직업기술, 가족상황 등이 사회적응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서독에 친척 유무 여부에 따라 물질·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데서 적응력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개별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응조건으로서의 위에서 언급한 조건 이외에도 이주의 목적, 이주시까지의 기간, 서독생활에 대한 기대감 및 서독 생활에 대한 준비형태와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조사결과 나타난 동독 이주민의 서독사회적응을 보면, 동독 이주민의 서독사회적응은 이미 서독으로의 이주 전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서독에 친척이 없는 동독 주민들은 이주전 이미 펜팔과 같은 서독 주민과의 서신을 통해 여행을 위한 정보교환을 교환하고 있었던 적도 있다. 또한 서독사회에서 필요한 영어를 배우거나 자녀들로 하여금 영어를 배우게끔한 것은 서독사회의 적응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준비는 이주후 서독사회에의 적응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대답하고 있다.

그 밖에도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사실은 동독 이주민들은 서독사회의 적응과정에서 당면할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와 같은 문제를 인지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업문제나 주택취득에의 어려움 등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보취득에도 불구하고 이주후 적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

은 아니었다. 그와 같은 사실은 면접조사에서 동독 이주민이 다음과 같이 실제로 말한 이야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들은 서독에 실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 자신이 실업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한 가지 언급할 만한 점은 서독에 친척이나 친지가 있어 그것이 동기가 되어 서독으로의 이주를 결심하는 데 비교적 큰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 이주후 기대했던 도움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엔 서독사회의 적응에 예상외의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 나. 신분 및 계층별 적응 실태

동독 이주민에 있어서는 법적인 신분이나 언어와 관련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 의미에서 서독 생활에의 동참여부는 노동 생활에의 참여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노동을 통해 근로소득을 취득하는 것이 소비생활에의 참여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서독에서 일자리를 확보하였느냐 아니냐가 사회적응에 대한 분석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

서독사회 자체가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독 이주민의 직업을 통한 사회 생활의 참여는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조건, 예를 들어 성별, 연령, 직업기술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비교적 단시간내 기존 동독에서 가졌던 수준에 상응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은 서독의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나 동독에서 이미 특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기술 노동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형태의 직업 노동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아주 높은 직업동기와 높은 자의식 및 적극성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구직에 대해서도 낙관적이었다. 또한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서도 아주 전략적이면서도 강한 집착력을 보였다. 또한 노동청의 구직을 위한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여유로움을 보였다.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엿보인다.

누구든지 일하기를 원하고 일하기 위해 집에 머물러 있거나 노동청에서 어떤 제시하는 자리만을 기다리지 않고 진실로 노력할 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서독에서의 생활은 내가 원했던 것이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 지 알고 있으며 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나에게서는 오히려 즐거움을 안겨준다.

위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서독의 경제체제 및 질서가 자신에게 부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배운 직업 기술이 서독사회에 부응하지 못해 몇 달 동안 일자리를 찾아도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보다 질적으로 못한 일자리가 나타났을 경우에도 수락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주민중 성공적인 사회적응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을 이주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주허가를 기다리는 장기간 내가 왜 살고 있는 사회를 바꾸어야 하는 지를 강하게 의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주후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연령별로 볼 때 이와 같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45세 미만 남자들이었다.

둘째, 동독에서 배운 기술에 상응하는 일자리를 얻는 것을 포기하고 서독의 직업생활에 곧바로 적응하는 사람들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발견되는 특징은 이들이 습득한 직업기술이 대량 산업생산분야에서 요구되는 분야가 아닌, 예를 들어 농업 및 철도업 등에 속한 부류의 사람들로서 한번 이상 직업형태를 바꾼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서독의 노동시장 여건이 좋지 않음을 의식하여 동독에서 가졌던 직업을 포기하고 이주후 단기간에 직장을 얻은 경우였다. 이들은 물질적, 경제적인 동기로 서독에 오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는 직장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노동의 질이나 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으며, 노동청으로부터의 일자리 소개도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부분 자력에 의해 직장을 구하기보다는 친척의 도움으로 이미 이주전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주 후라도 수일내 늦어도 수주내 일자리를 얻었다.

이와 같은 직업을 확보하게 된 이유는 단기간에 소득을 가져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대부분 집안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거나, 이주후 가구구입 등 일상생활을 유

지하기 위한 초기 소비가 많아 형편이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는 이주자들의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본인의 직업에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로는 첫째, 자신의 직업이 기존 동독에서 가졌던 노동의 질보다 저하되었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고 둘째, 노동의 질이 떨어지는 데 반해 부과되는 작업의 양은 많으며 셋째, 자신을 사회계층에 있어 가장 하층계급으로 분류함으로써 갖는 불만과 넷째, 자신들보다 교육정도가 훨씬 낮은 서독 노동자들로부터 거부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서독 노동자들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서독 노동자들의 언급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당신 여기 무엇하러 왔소. 당신네들은 오로지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 뿐이요.

또는

당신은 여기온 지 얼마 안되는데 벌써 일자리를 가졌오?

등이다.

경제적인 동기에 의해 서독으로 이주하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자신이 사회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주위로부터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세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지식인(academician)이나 국가기

관 행정 분야 종사자 및 수요가 별로 없는 가내 수공업 계통의 전문 기술인들로서 연령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계층이다. 이들은 모두 동독지역에서 직장을 가졌으나 서독에서는 대부분 실업자로 있거나 실업자로 존재하는 기간이 비교적 긴 사람들이다. 이들은 노동청으로부터 직장을 알선받는 기회가 비교적 적은 사람들이다. 지식인의 경우에는 흔히 학력인정 문제가 대두된다. 또한 서독에 친인척이 없는 경우가 많아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서독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막노동이나 교대노동(Schichtdienst) 등 아무 일이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업자 수당을 받고 있는 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조급해 하지 않으며, 자신에 부합되는 일자리를 얻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있다. 아무 일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일자리를 받아들일 경우 자신이 유지했던 신분이 질적으로 저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얼마 동안 실업자로 남아 있으면서 적당한 일자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직 기간이 길어질 경우 정신적인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계속 낙관적이지 못함을 인식하게 된다. 비록 노동청으로부터 일자리를 소개받더라도 취업에 대한 최종결정이 고용주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이 그와 같은 결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정신적인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소비성향

동독 이주민이 서독이주 직후 서독인의 소비생활에 대한 놀라움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이것이 이주민의 과소비 현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동독 이주민이 비록 소비지향적 성향을 보이더라도 이는 과도기적 현상으로서 그리 오래가지 않고 있다.

이는 동독 체류시 몸에 밴 근검정신과 꼭 필요한 것만을 사는 소비행태가 서독사회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절약 위주의 소비성향은 이주 초기 비교적 큰 액수의 내구재 소비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다. 동독 이주민들은 “계산된 소비”와 절약(여행포기, 금연, 술자리 삼가 등)을 통해 자신이 거쳐하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보다 더 큰 관심과 신경을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비행태는 종종 서독 주민들로부터 부러움과 오해를 살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주한 지 얼마되지 않아 동독 이주민이 제대로 된 주거환경 속에 생활하는 것을 보고 서독 주민들은 서독의 사회보장제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자 행동에 대한 학습은 필요하며 서독사회에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을 동독 이주민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라. 대인관계

직장동료, 이웃, 인척 등은 이주민의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공적인 사회적응 여부는 이들과 어떤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주민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단기간 내에 직장을 구함으로써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독 주민들로부터의 질투심을 유발함으로써 대인관계가 원만히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4)</sup>

일반적으로 동독 이주민들은 이전에 이주해 온 동독 주민과의 접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 이주민들과는 비교적 자신의 경험을 잘 이야기하며, 서로 공감하는 범위가 넓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비물질적인 측면에서 “고향”같은 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동독 이주민들 사이의 인적 관계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휴가(Urtaub)의 경우에 있어 서독사람들 사이에는 별로 특별히 이야기할 거리가 없죠. 그들은 이미 다 가본 곳이니깐요. 그러나 동독에 있을 경우 우리들이 휴가를 갔다오면 서로 3개월은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14) 일상생활에서 이주민들의 사회적인 고립은 다음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실업에 따른 사회적인 고립으로 극히 제한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둘째, 이주민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이 오히려 서독 주민으로부터 질투심을 유발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경우 셋째, 친인척을 통해서만 대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등이다.

동독 이주민들 중에는 사람에 따라서는 대인관계에서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해 소극적이거나 사람 사귀기를 꺼려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동독 이주민들의 서독 주민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긴밀(intensive)하지 못하며 직장에서도 동료로 여기기보다는 경쟁 상대로 보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동독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동독 주민을 같은 고향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이 때문에 서독으로의 이주 후 첫째 휴가를 사회주의 국가에 가서 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곳에서 동독의 고향지역에서 온 사람을 만나려고 하며 이를 위해 휴가를 가려고 의도하는 사람이 많다.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의식적으로 동독 주민들간에 친분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친·인척이나 동독으로부터 같이 이주한 사람들과 가지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편향적 인적관계 형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주민들을 주위로부터 고립 시킴으로써 스스로 '섬'에서 사는 것과 같은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마. 정체성

동독 이주민이 스스로 느끼는 행복감과 만족감, 바꾸어 말해 자아 정체성은 개인 심리적인 문제로 인식될 수 있는 반면, 사회적응을 제고시키는 사회적 문제, 즉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 인식의 문제로도 고찰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사회적응과 개인의 정

체성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응(integration)은 사회학 분야와 관련하여, 정체성(identity)은 심리학 분야와의 관계 속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독 이주민이 정체성을 느끼는 경우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사회에 귀속되어 있으며, 사회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이다. 동독으로부터의 이주초기에는 서독사회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적응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작용해 개인적인 정체성 확보는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성공적인 사회적응력의 제고는 개인적인 만족과 행복감으로 직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공적인 사회적응은 이주민으로 하여금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며 자신이 불행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사회적응과정이 잘못된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체제에 대한 적응 내지 동화와 실제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 자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주민의 사회적응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주민이 사회적응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개척자적 정신”을 가지고 사회생활에 임했을 경우 바로 이 때문에 자신이 속한 주위로부터 오히려 배척당하고 거부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주민으로서 사회적인 성공이 크면 클수록 주위로부터 시기심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동독 이주민들은 이주시까지 집단주의적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견지하고 많은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집단의 문제로 이해하는 경향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타인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극히 개인적인 문제조차도 집단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들을 가진다. 어떤 생활상의 어려움에 봉착하였을 때, 자신들이 스스로 알아서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누군가 제3자가 나타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의존하려는 태도들을 갖고 있는 경향을 띤다.

그리고 이들이 동독에서 배운 것이라고는 이념과 기술교육이 전부다. 개인적인 정서와 사고를 바탕으로 한 자기 성격을 제대로 형성시키지 못하면서도 자기 비판은 강하다. 가정생활까지도 속박을 받을 만큼 통제를 받았다. 이와 같은 속박 속에 살다가 자유를 얻었을 경우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했던 중심이 무너지기 쉽다. 각 개인에게 복종만을 강요하던 사회주의 체제에 타성화된 상태에서 개인의 자발성과 책임의식이 강조되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다원적인 사회를 경험하는 경우 엄청난 심리적 부담감을 갖는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자아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겪게 될 경제적인 불안은 크기 때문에 정신적인 방황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물질적인 생활기반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의 장으로 여겼던 직장을 잃게 될 경우, 자신이 이루었던 과거노동이 전혀 가치없는 곳에 투입이 되었다고 느끼는 자기비하와 함께 이에 결부된 생의 부정적 의미로 인해 새로워진 환경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일종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감도 가지게 된다. 집단주의를 지향해 온 수직적 획일주의 사회 속에서 형성된 경직성, 폐쇄성 등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

용해 나가는 데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동독 이주민의 심리적 불안감은 무엇보다도 실업으로 인해 물질적 생활기반과 자아실현의 토대를 상실할 경우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누구나 경쟁사회 속에서는 스스로 자기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적 압박과 불안이 엄청나게 크다.

#### 바. 행정관청과의 관계

동독 이주민은 서독 당국에 의해 수용될 당시 서독 당국이 이주민에게 보이는 관료주의적 행동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서독 사회의 적용에 행정관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자립능력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관청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특히 실업수당이나 공공부조, 주택수당, 자녀수당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일수록 관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편이다. 그와 같은 긍정적인 인식은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나는 여기서 아직 일도 하지 않았는데 900마르크를 받는다. 동독에서는 일을 하고도 500마르크 밖에 벌지 못했다.

라든지

나는 서독사회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 정부는 내 생활을 유지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나는 만족해야 한다. 동독에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지 않는가.

하는 표현이 그것이다.

#### 4. 요약 및 시사점

동독 이주민의 서독사회 적응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는 주로 1984년 동독 정부에 의해 대규모로 동독 주민들을 서독 이주가 허가된 동독 이주민 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동독 이주민들의 서독사회 적응은 사회화와 통합이라는 개념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사회화와 통합은 주로 인간으로서의 개인이 사회 주변의 환경과 사회구조속에 정상 편입되어 서독 사회 생활에 필요한 규범과 양식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동독 이주민의 서독사회 적응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정부의 구동독 이주민에 대한 수용태도다. 독일 정부는 구동독 이주민의 신분여하에 관계없이, 즉 그들이 합법 이주민이든, 탈출 이주민이나 실향민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독일 국민으로 간주하여 특별한 국적취득 절차없이 수용하고, 독일 국민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였다. 이와 같은 서독 정부의 자세는 구동독 이주민의 서독 사회에의 적응력을 제고시켰음이 분명하다.

둘째, 이주민의 자립 정착을 위해 서독의 사회보장제도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었다.

셋째, 이주민의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해 서독 정부가 직접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실시한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가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마련, 연방 및 주정부 정치교육센터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

도록 한 점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에서 새로운 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한 사상전환 교육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이 민주사회 한시민으로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역점을 두었다.

넷째, 구동독 이주민의 서독 사회적응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보면, 우선 이주민의 신분 및 계층이나 직업·기술 습득 여하에 따라 적응 정도와 속도가 달라지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독에서 직업교육을 이수한 기술노동자일수록 서독 사회에서 높은 직업 동기와 자기실현 의식이 높았다. 또한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거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이주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일자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동독에게 배운 기술에 상응하는 일자리를 얻는 것을 포기하고 친척 등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의 직업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자기 적성과 이전의 직업 분야와 연관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이주민으로 장기간의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에도 물론, 이와는 반대로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서독 주민들로부터 오히려 질투심을 유발하게 함으로써 주변으로부터 고립을 경험하는 사례가 있는 바, 구동독이 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 배려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사회적응에서 동독 이주민들이 가지는 정체성, 다시말해 동독 이주민이 스스로 느끼는 서독 사회에서의 행복감과 민족감은 사회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사회적응력 제고는 개인

스스로 '개척자적 정신'을 가지고 사회생활에 임할 경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그와 같은 자주적 노력과 자기 책임 의식을 확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주민에 교육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제IV장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실태조사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41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1996년 6월~10월에 걸쳐 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심층면접도 병행하였다. 현재 북한이탈 주민의 수가 800명을 넘어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사대상자의 수는 전체의 5%정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 주민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한 과학적인 표집절차를 거쳐서 조사대상자들을 선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자가 전체 북한이탈 주민들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sup>15)</sup>

조사대상자들의 귀순시기는 1980년 이전이 2명, 1981~1990년까지가 6명, 1991년에서 1996년까지가 33명이었으며(<표 7> 참조), 이 가운데 북한에서 당원이었던 사람이 17명이었으며, 당원이 아니었던 사람은 5명이었고, 나머지 19명은 가족 중에 당원이 있는 사람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북한 학력은 고졸이 15명, 대학생이 2명, 대학중퇴가 2명, 대졸이 20명, 기타가 2명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연령분포는 20대가 9명, 30대가 24명, 40대 이상이 6명이었다. 북한에서의 직업은 학생이 3명, 노동자가 12명, 인텔리가 2명, 군인이 11명, 공무원이 6명, 무역종사자가 3명, 기타 1명이었으며,

15) 예를 들어 209명을 대상으로 한 1994년 통일원의 귀순자 면담조사와 비교할 때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상대적으로 고학력자가 많았다.

남한에서의 직업은 학생이 2명, 직장인이 20명, 자영업이 2명, 군인이 1명, 무직이 16명이었다(부록 9, 10번 참조).

<표 7> 조사대상자의 특성

귀순시기				명
	① 1979년			1
	② 1980년			1
	③ 1981년			1
	④ 1987년			2
	⑤ 1988년			1
	⑥ 1989년			1
	⑦ 1990년			1
	⑧ 1991년			1
	⑨ 1993년			5
	⑩ 1994년			12
	⑪ 1995년			9
⑫ 1996년			6	
학 력	북 한		남 한	
	① 고졸	15	① 전문대졸	1
	② 대재	2	② 대재	8
	③ 대졸	20	③ 대졸	8
	④ 대퇴	2	④ 대졸이상	1
	⑤ 기타	2	⑤ 기타	1

## 1. 북한이탈 주민의 남한사회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 가. 남한체제에 대한 인지도

북한이탈 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순조롭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남한사회의 실상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남한사회의 정치·경제·사회체제에 대해 친화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부족은 실제 생활에서 각종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한사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체제적응과정에서 냉소적 태도와 소극적 입장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탈 주민들의 남한사회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북한이탈 주민들의 남한체제에 대한 인지도를 물어본 것이 <표 8>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귀순자들은 비교적 남한체제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분야별 인지도에서는 정치적인 요소(82.43%)나 경제적인 요소(83.18%)에 대한 인지도에 비하여 사회적인 요소(75.62%)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 주민들이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를 얻는 통로는 <표 9>에 나타나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 주민들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남한사회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lt;표 8&gt; 남한체제에 대한 인지도

	비율	
정치적 요소 82.43(평균)	① 대통령제	80.5
	② 감사원	78.0
	③ 지방자치제	82.9
	④ 가정법원	56.1
	⑤ 4.19	90.2
	⑥ 조순	78.0
	⑦ 지역구	68.3
	⑧ 12.12와 5.18	97.6
	⑨ 자민련	97.6
	⑩ 최규하	95.1
경제적 요소 83.18(평균)	① 바겐세일	68.3
	② 주식투자	87.8
	③ 보험	97.6
	④ 농협	92.7
	⑤ 중소기업	95.1
	⑥ 국제청	73.2
	⑦ 할부구매	75.6
	⑧ 사채	70.7
	⑨ 신용카드	97.6
	⑩ 토큰	73.2
사회적 요소 75.62(평균)	① 노래방	97.6
	② 에이즈	100
	③ 안성기	51.2
	④ 황영조	82.9
	⑤ 비디오	97.6
	⑥ 속셈학원	87.8
	⑦ 앵커맨	41.5
	⑧ 우등고속	61.0
	⑨ 해태 타이거즈	41.5
	⑩ 의료보험카드	95.1

&lt;표 9&gt; 남한사회의 정보획득원

	비율
① 정부의 교육	5.4
② 신문·방송	78.4
③ 직장 및 학교 동료	10.8
④ 이웃사람	0
⑤ 이전에 귀순 동료	0
⑥ 기타	5.4

※ 누락: 4

#### 나. 정치·사회참여도

소속사회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귀속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은 정치·사회활동에 대한 참여도이다. 북한이탈자들이 남한사회의 방관자로 남아있는가 아니면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 적극적인 소속의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치·사회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측정해 보았다.

특히 북한이탈 주민의 정치·사회적 참여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투표 여부, 사회단체에 가입여부 그리고 각종 성금의 참여 여부를 물어보았다(<표 10> 참조). 북한이탈 주민들은 선거당시 투표권이 없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인의 투표율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것으로서 북한이탈 주민들은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참여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사회

단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63.4%이고 각종 성금을 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46.3%나 된다는 점은 사회적 참여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0> 북한이탈 주민의 정치·사회참여도

		비율
투표	① 반드시 했다.	58.5
	② 가끔 했다.	9.8
	③ 한번도 안했다.	4.9
	④ 선거때 투표권이 없었다.	26.8
사회단체와 친목단체 참여 여부	① 3개 이상의 단체에 참여하고 있다.	9.8
	② 1-2개의 단체에 참여하고 있다.	26.8
	③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없다.	63.4
각종 성금의 기부 경험	① 3번 이상	24.4
	② 1-2번	29.3
	③ 없다	46.3

### 다. 남한사회에 대한 기대

북한이탈자들이 남한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하느냐의 여부는 남한사회로 오기 이전 남한사회에 대해 지녔던 기대와 관계가 있다. 남한사회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고 현실적인 기대를 가졌을 경우, 순조롭게 적응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남한사회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지녔을 경우, 기대와 현실의 격차로 인해 실망감이 클 수 있다.

북한이탈 주민들이 남한에 대해 일차적으로 기대한 것은 자유로운 삶이라고 볼 수 있다(44.7%).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18.4%), 물질적 풍요(13.2%), 새로운 교육기회(10.5%)를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표 11> 참조). 이렇게 보면 북한이탈자들은 대부분 남한이 자유로운 삶과 자신의 능력이 발휘되는 경쟁사회라는 점에 호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1> 남한사회에의 기대

	비율
① 자유로운 삶	44.7
② 물질적 풍요	13.2
③ 자신의 능력발휘	18.4
④ 새로운 교육의 기회	10.5
⑤ 기타	13.2

※ 누락: 3

## 라. 남한체제에 대한 평가

북한이탈 주민들은 전체주의적이고 계획경제체제였던 북한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원주의적이고 시장경제질서가 작동하는 남한사회에 살게 되었다. 남북한간 기본적인 체제상의 차이는 북한이탈자의 사회적응을 어렵게하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이탈자들이 자유와 경쟁이 보장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남한체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 보았다.

북한이탈 주민들의 남한체제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표 12>이다. 「남한사회가 땀흘린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63.4%로 제일 높았고, 이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응답(22.0%)을 더하면 85.4%에 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한사회가 땀흘린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사회의 빈부격차에 대해서는 「매우 심하다」는 응답이 46.3%로 제일 많았고 「다소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4.4%로 「심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26.8%)보다 월등히 많았다. 따라서 북한이탈 주민들은 남한의 자본주의적 체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남한의 불평등 상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lt;표 12&gt; 남한사회에 대한 평가

		비 율
남한사회평가 (일한 만큼 보상)	① 전적으로 동의한다.	63.4
	② 대체로 동의한다.	22.0
	③ 대체로 반대한다.	9.8
	④ 전적으로 반대한다.	2.4
	⑤ 기타	2.4
남한사회의 빈부차이	① 매우 심하다고 생각한다.	46.3
	② 다소 심하다고 생각한다.	24.4
	③ 별로 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6.8
	④ 전혀 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0
	⑤ 기타	2.4

#### 마. 남북한 주민의 생활태도 비교

남북한 주민들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과, 성향, 태도 등에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탈 주민들은 남한사회의 실제 생활에서 부딪치게 되는 남한 사람들의 성향과 태도를 북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표 13>은 북한이탈 주민들이 남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비교한 것이다. 질문내용은 북한 주민들과 비교하여 남한 주민들의 생활태도를 물어본 것이다. 북한이탈 주민들은 부지런함이나 창의력,

교육열 그리고 직업만족도 측면에서는 남한 주민들이 나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애국심이나 가족 유대감, 협동심 측면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나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표 13> 북한 주민과 비교한 남한 주민의 생활태도

	매우나음	다소나음	비슷함	다소못함	매우못함	Missing
부지런함	43.9	19.5	21.9	4.9	4.9	4.9
창 의 력	73.1	9.7	9.7	4.9	0	2.4
교 육 열	61.0	22.0	12.2	2.4	0	2.4
질서의식	22.0	22.0	17.1	17.1	19.5	2.4
직업만족도	17.1	29.2	29.2	19.5	0	4.9
애 국 심	14.6	7.3	17.0	29.3	26.8	4.9
집단에 대한 소속감	14.6	12.2	7.3	14.6	41.5	9.8
가족유대감	17.1	12.2	22.0	22.0	24.3	2.4
협 동 심	4.9	4.9	14.6	31.7	41.5	2.4

#### 바. 남북한 사회의 장단점

같은 맥락에서 남북한 사회의 장단점을 물어본 것에 대한 응답 결과가 <표 14>이다. 북한이탈 주민들은 남한사회의 장점으로 「자유」(41.5%), 「노력에 대한 대가를 얻는 것」(26.8%)을 꼽는 경우가 많았으며, 단점으로는 「이기주의」(34.1%)와 「국론분열」(14.6%), 「배금주의」(12.2%)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북한사회의 장

점으로는 「단결력」(34.1%), 「순박함」(22.0%), 「복지정책」(12.2%)을 지적한 경우가 많았고, 단점으로는 「확일성·정치적 통제」(43.9%), 「창의력 부족」(12.2%)을 문제시하는 사람이 많았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탈자들이 남북한 사회의 장단점을 각각 지적하였지만, 이것들이 사실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동일한 현상의 두 측면이라는 점이다. 남한 사회에서는 자유와 다양한 기회가 보장되지만 동시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기주의와 다양한 여론의 존재가 공존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응집력이 높고 순박한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창의력이 부족하고 확일적인 사회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자들은 남북한의 이러한 장단점이 각각 서로 분리하기 힘든 동시병행적 현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lt;표 14&gt; 남북한 사회의 장단점

	장 점	비 율	단 점	비 율
남한 사회	① 자유	41.5	① 배금주의	12.2
	② 풍요로움	9.8	② 이기주의/ 개인주의	34.1
	③ 기회보장	9.8	③ 과소비현상	10.0
	④ 창의력	2.4	④ 빈부격차가 심함	4.9
	⑤ 노력에 대한 대가를 얻는 것	26.8	⑤ 국론분열	14.6
	⑥ 기타	14.6	⑥ 낮은 안보의식	4.9
			⑦ 세대간 갈등	2.4
			⑧ 기타	17.1
북한 사회	① 순박함	22.0	① 획일성/정치적 통제	43.9
	② 단결력	34.1	② 폐쇄성	4.9
	③ 복지정책	12.2	③ 의식주문제/ 경제적 난관	9.8
	④ 근면함	7.3	④ 타율적	2.4
	⑤ 상호신뢰성	9.8	⑤ 창의력 부족	12.2
	⑥ 경쟁이 없는 점	4.9	⑥ 이상화	2.4
	⑦ 기타	4.9	⑦ 기타	9.8

### 사. 통일을 위한 남한의 과제

북한이탈자들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은 통일을 위한 남북한 주민의 사전연습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 주민들은 남한사회에서 생활하면서 통일후 겪게 될 문제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들은 통일을 위해서 서로 돕고 나누는 자세를 확립하여 공동체의식을 회복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통일을 위해서는 경제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표 15> 참조). 이를 미루어 볼 때, 북한이탈 주민들은 남한 주민들이 공동체의식을 결여하고 있으며,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을 포용하고 이들과 함께 경제적·사회적 자산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적 정신의 함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통일을 위한 남한의 과제

	비 율
① 개인의 자유신장	2.6
② 경제적 발전	15.4
③ 사회질서의 확립	5.1
④ 빈부격차 해결	0
⑤ 도덕성 회복	2.6
⑥ 서로 돕고 나누는 자세· 공동체 의식	35.9
⑦ 안보의식 고취 및 국방력 강화	7.7
⑧ 정치권 및 정부불신 극복	7.7
⑨ 통일의지	15.4
⑩ 기타	7.7

※ 누락: 2

### 아.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남한 주민의 태도

북한이탈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이탈자 자신들의 적극적인 태도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이들을 긍정적으로 포용하고자 하는 남한 주민들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탈 주민들은 자신들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 보았다.

북한이탈 주민들은 자신들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태도가 냉담하거나(33.3%), 적대적·멸시적(25.6%)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동정적이거나(10.3%), 호의적(10.3%)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었다(<표 16 참조>).

전체적으로 볼때, 북한이탈 주민들은 남한사회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남한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빈부격차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능력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 보상을 신뢰하는 등 자본주의적 사회양식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자유와 기회보장과 같은 민주적 사회질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6>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남한 사람의 태도

	비 율
① 호의적이다.	10.3
② 동정적이다.	10.3
③ 좋게도 나쁘게도 보지 않는다.	17.9
④ 냉담하다.	33.3
⑤ 적대적이고 멸시적이다.	25.6
⑥ 기타	2.6

※ 누락: 2

구조적인 차원과는 달리 남한 주민들과 그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북한이탈 주민들은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도 남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남한사회의 부정적인 요소를 지적하는 데도 개인의 의식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북한사회의 긍정적인 요소로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의식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2.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 실태

북한이탈 주민들의 사회적응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신들의 능력, 남한의 삶에 대한 자신감, 미래의 계획,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도, 북한에서의 생활과의 비교, 남한생활에서의 어려움 및 그 원인, 그리고 직장생활 등에 대해서 물어 보았다.

### 가. 개인능력 및 삶에 대한 평가, 미래계획, 생활만족도

북한이탈 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자신감과 자아정체성(self-identity)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 여부를 평가하는 요인중의 하나가 자신에 대한 평가와 생활만족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 주민들의 개인 능력, 현재의 삶에 대한 평가, 장래의 계획 그리고 남한생활에서의 만족도를 정리한 것이 <표 17>이다.

현재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매우 자신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5.0%, 다소 자신있다는 응답은 25.0%로 조사대상자의 70.0%가 능력에 자신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자신이 없다는 사람은 27.5%였다.

남한사회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51.3%가 확실히 자신있다고 응답하였고,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는 응답은 30.8%, 별로 자신이 없다는 응답은 15.4%, 전혀 자신이 없다는 사람은 2.6%였다.

미래에 대한 계획 여부를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79.5%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20.5%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현재 남한사회의 생활에 대한 만족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매우 만족 35.0%, 다소 만족 37.5%).

&lt;표 17&gt; 개인의 능력 및 삶에 대한 평가, 미래계획, 생활만족도

개인 능력에 대한 평가		비율
	① 매우 자신있다.	45.0
	② 다소 자신있다.	25.0
	③ 다소 자신없다.	12.5
	④ 매우 자신없다.	15.0
	⑤ 기타	2.5
※ 누락: 1		
삶에 대한 평가		비율
	① 확실히 자신이 있다.	51.3
	②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30.8
	③ 별로 자신이 없다.	15.4
	④ 전혀 자신이 없다.	2.6
※ 누락: 2		
미래 계획		비율
	① 있다.	79.5
	② 없다.	20.5
※ 누락: 2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		비율
	① 매우 만족한다.	35.0
	② 다소 만족한다.	37.5
	③ 다소 만족하지 못한다.	17.5
	④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	10.0
※ 누락: 1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북한이탈 주민들이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나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자신이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남한사회에 대해서 비교적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북한 및 남한에서의 삶의 비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출이전의 북한의 삶과 현재의 삶을 비교해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남한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표 18>참조).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남한에서의 경제적 여유 정도가 북한에서와 비교하여 「매우 나아졌다」(41.5%)와 「다소 나아졌다」(14.6%)는 응답이 과반수가 넘었으나 「나빠졌다」는 응답(다소 나빠졌다 14.6%, 매우 나빠졌다 17.1%)도 31.7%로 적지 않다. 더욱이 사회적 대우에 대해서는 「매우 나빠졌다」는 응답이 31.7%, 「다소 나빠졌다」는 응답이 17.0%로, 「매우 나아졌다」(22.0%)와 「다소 나아졌다」(9.8%)보다 월등히 높다.

이같은 결과를 볼 때, 북한이탈 주민들은 남한사회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아졌으나, 사회적 대우 측면에서는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들은 사회적 위신의 손상을 경제적 여유의 향상으로 상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lt;표 18&gt; 북한에서의 삶과 남한에서의 삶의 비교

	매우 나아졌다	다소 나아졌다	별차이 없다	다소 나빠졌다	매우 나빠졌다	기타	잘모르 겠다
경제적 여유	41.5	14.6	4.9	14.6	17.1	2.4	4.9
사회적 대우	22.0	9.8	12.2	17.0	31.7	0	7.3

#### 다. 남한생활의 분야별 어려움 및 그 원인

북한이탈 주민들은 직장생활과 사회생활 등 일상생활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이 특히 어떤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북한이탈 주민들이 남한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의 정도를 표현한 것인 <표 19>이다. 조사대상자들은 재산모으기와 취업문제, 그리고 직장생활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응답과 어렵지 않다는 응답을 비슷한 정도로 대답했다. 그러나 자녀교육이나 결혼문제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응답자가 어렵지 않다는 응답자보다 더 많았다. 그리고 남한 주민과의 융화문제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다는 응답이 65.8%로 훨씬 많았으나, 언어습관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lt;표 19&gt; 남한생활의 분야별 어려움

	매우 어렵다	조금 어렵다	별로 어렵지않다	전혀 어렵지않다	잘모르 겠다
재산모으기	29.3	17.1	36.5	9.8	7.3
취업	26.8	17.1	26.8	19.5	9.8
자녀교육	14.6	19.5	24.4	4.9	36.6
결혼	51.2	12.2	19.5	0	17.1
직장생활	17.1	19.5	22.0	12.2	29.2
남한 주민 과의 융화	9.8	17.1	36.5	29.3	7.3
언어습관	14.6	39.0	26.8	14.6	4.9

북한이탈 주민들은 남한생활이 어려운 이유로서 주위의 무관심과 냉대(36.8%), 그리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26.3%), 친척이나 친구가 없음(23.7%), 직업이 맞지 않음(15.8%)을 중요하게 꼽고 있다(<표 20> 참조).

&lt;표 20&gt; 남한생활이 어려운 이유

	비율
① 삶의 목표의 불확실	5.3
② 이상과 기대가 큼	7.9
③ 직업이 맞지 않음	15.8
④ 생활적응교육의 부족	2.6
⑤ 북한 가족에 대한 죄책감	26.3
⑥ 주위의 무관심과 냉대	36.8
⑦ 친척이나 친구가 없음	23.7
⑧ 기타	31.6

※ 누락: 3

## 라. 직장 이전 횟수 및 직장에서의 애로사항

북한이탈 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소속 직장의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북한이탈자들이 소속 직장에서 특별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탈자들이 다른 직장인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점을 감안하여, 북한이탈자들이 직장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 보았다.

북한이탈 주민들의 직장생활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21>에 정리되어 있다. 직업의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의 61.0%가 직업을 갖고 있었으나 무직인 경우도 39.0%나 되었다.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의 51.2%가 첫번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직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직장을 갖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는 직장생활에 애로사항이 없었다는 응답이 많았으나(42.9%), 남한에서는 업무(38.5%), 대인관계(23.1%), 급여(11.5%)의 순으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lt;표 21&gt; 직장 이전 횟수 및 직장에서의 애로사항

직장 이전 횟수	비 율		
	① 1번	51.2	
	② 2번	7.3	
	③ 5번	2.4	
	④ 무직	39.0	
직장에서 애로사항		남한에서	북한에서
	① 업무	38.5	5.7
	② 대인관계	23.1	2.9
	③ 급여	11.5	8.6
	④ 출퇴근문제	7.7	8.6
	⑤ 인사·복리후생 등 회사정책	3.8	8.6
	⑥ 애로사항 없음	0	42.9
	⑦ 기타	15.4	22.9
	※누락	15	6

#### 마. 남한생활에서 필요한 사항

북한이탈 주민들은 남한이라는 낯선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유형, 무형의 지식과 자산이 필요하다. 북한이탈 주민들은 경제적·사회적·인간적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어느 것이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북한이탈 주민들은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로

돈을 버는 것(24.0%)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지식이나 실력을 쌓는 것(20.0%), 깊은 인간관계(20.0%)를 중시하였다. 뒤를 이어 마음의 안정(14.7%), 취직이나 승진시험에 성공하는 것(9.3%), 교양과 인격을 넓히는 것(4.0%)을 지적하고 있다(<표 22> 참조).

<표 22> 남한생활에서 필요한 사항

	비율
① 마음의 안정	14.7
② 지식이나 실력을 쌓는 것	20.0
③ 돈을 버는 것	24.0
④ 여가 선용	1.3
⑤ 깊은 인간관계	20.0
⑥ 승진, 취직시험에 성공하는 것	9.3
⑦ 교양과 인격을 넓히는 것	4.0
⑧ 흥미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	0
⑨ 기타	6.7

#### 바. 남한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사회의 구성원들과 직·간접적 유대망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 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도 여러 유형의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 주민들이 남한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남한의 친

척이나 가족이며(29.3%), 다음으로 정부·사회단체 사람(22.2%),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19.4%), 이웃주민(13.9%), 직장동료(8.3%)의 순이었다(<표 23> 참조).

이렇게 볼 때, 북한이탈 주민들의 친척뿐만 아니라 정착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접촉하게 되는 정부 및 사회단체 사람들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3> 남한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

	비율
① 직장동료	8.3
② 이웃주민	13.9
③ 정부·사회단체 사람	22.2
④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들	19.4
⑤ 가족·친지	29.3
⑥ 가까이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2.8
⑦ 기타	4.1

※누락: 5

사: 남한 주민과 대화시 어려웠던 경험과 그 원인

남북한은 동일 민족으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 및 체제상의 차이로 인해 언어면에서 상당한 이질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남북한간 언어의 이질화 정도 및 이로 인한 북한 이탈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물어 보았다.

<표 24>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남한 주민과 대화할 때의 어려웠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이다. 대화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조사대상자의 59.0%로 과반수가 넘었으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대상으로 어려움의 원인을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언어의 차이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52.4%).

<표 24> 남한 주민과의 대화시 어려웠던 경험과 그 원인

		비 율
남한 주민과 대화시 어려 웠던 경험	① 매우 자주 있다.	7.7
	② 가끔 있다.	51.3
	③ 별로 없다.	28.2
	④ 전혀 없다.	12.8
※누락: 2		
남한 주민과 대화시 문제 가 있었던 원인	① 언어의 차이	52.4
	② 사고방식의 차이	28.6
	③ 생활관습의 차이	14.3
	④ 기타	4.8
※누락: 20		

### 3.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의 특성

사회적응은 사회구성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제도와 절

차에 대해 적응하는 동화(assimilation)과정이다.)<sup>1)</sup> 개인 차원의 사회적 적응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개인의 사회적 적응실태는 부문별로 다를 수 있으며, 표면적 적응과 잠재적 부적응이 공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응을 체제적응과 생활적응, 심리적응의 3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체제적응은 이념과 가치체계, 정치·경제·사회제도의 기본 규범과 원칙 등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끼고 이를 내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체제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 과정은 이전체제에 대한 동질감이 소멸되는 탈사회화과정(de-socialization)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동질감이 형성되는 재사회화(re-socialization)과정으로 구분된다. 탈사회화과정과 재사회화과정은 순차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발생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재사회화가 이루어진 뒤에도 이전 사회에 대한 동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잠재적으로 잔존할 수도 있다.

둘째, 생활적응은 직장생활, 여가생활, 종교활동 등 일상 생활에서 행위규범과 절차에 대해서 습득하고 이를 체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환경에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생활적응이 용이해질 가능성이 증가한다. 그러나 새로운 생활방

1) 개인적 차원의 사회적응은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갈등해결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각 부문간 상호의존성과 상용성정도를 증가시키는 사회적 차원의 통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배규한, “통일이후 남북한의 사회통합,”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제미한인교수협의회·동북아문화연구원 주최 광복 50주년 기념 한·미국제학술회의, 『통일이후 남북한의 사회적 통합』, 1995. 11. 2.

식과 가치관, 행위규범 등에 적응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셋째, 심리적응은 개인의 내면적 안정감과 심리적 만족감이다. 이것은 자기정체성(self-identity)과 자존심(self-esteem)의 확립과정이다. 북한에서는 집단에 대한 소속이 우선시되고 집단적 가치를 최우선적 가치로 신봉했기 때문에 다원주의 사회인 남한에서 개인적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정립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체제적응이나 생활적응에 비해서 심리적응은 측정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내면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새로운 생활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민하는 북한이탈 주민의 경우 심리적 안정감을 획득하는 것은 매우 힘든 문제다.

다음에서 북한이탈 주민들의 남한사회인지도 및 평가와 사회적응실태에 관한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들의 체제적응, 생활적응, 심리적응 정도를 분석하였다.

#### 가. 체제적응

북한이탈 주민들은 남한체제에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체제나 경제체제에 대한 인지도도 높은 편이고, 투표율도 전체 국민의 투표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남한사회의 빈부격차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나 개인적인 노력에 따라 성공이 좌우된다고 보고 있으며, 남한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돈을 버는 것으로 인식하는 등 남

한의 자본주의현실에 대해서도 비교적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자들은 이념적으로도 대부분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북한이탈 이전 남한에 대해서 자유로운 생활을 가장 많이 기대하였고, 현재도 '자유'를 남한사회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다. 따라서 남한사회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해서 북한이탈 주민들은 비교적 잘 적응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나 이북사람을 욕하면 거부감이 든다"는 사람(1996. 11. 1 면담자 ○ 씨)도 적지 않고, 특히 미국사람이나 미국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은 오랜기간 동안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한 북한이탈 주민들이 많았다.

이북사람들을 욕할 때 기분이 나쁩니다. 미국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1996. 11. 1 ○ 씨)

따라서 북한이탈자들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인정하고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거부하면서도, 내면화된 김일성주의나 반미주의를 쉽게 떨쳐버리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생활적응

생활적응은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나 경제와 같은 체제관련 요소보다 사회 요소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분야별 어려움에서도 언

어생활과 가정생활에서 더욱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대부분이 영어의 활용이 높은 남한의 언어습관에 적응하기 어려웠으며, 한자의 해독력 부족으로 신문과 같은 중요한 정보전달매체에의 접근이 어렵다고 실토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 이질화의 결과로 초래된 일상적인 문제의 대표적인 예로 남녀관계를 지적하는 경우도 많았다. 즉, 북한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성향이 강하여 남성우위의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남한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다는 점이다.

가정생활에서의 어려움은 남녀관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남편이 모든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여성은 순종적입니다. 남한에서는 아내가 경제권을 갖고 있고, 남편의 일에 간섭을 많이 합니다.(1996. 10. 24 0 씨)

북한에서는 세대주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1996. 6. 20 0 씨)

북한이탈자들이 북한에서의 직장생활에 비해서 남한의 직장생활에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도 생활적응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자들이 이처럼 생활적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장기간의 남북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이질화현상 때문이다. 언어문제나 가족문제와 같이 일상적인 생활수준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겪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활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이질적인 요소들은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성장기의 가정교육이나 친구집단(peer group)의 교제관계를 통해서 획득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단기간에 이를 습득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간 학교 교과과정의 차이와 기초지식의 차이도 북한이탈자들의 생활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1년만에 중퇴하였습니다. 영어나 한자도 그렇지만 역사부분에서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호 같은 분은 북한의 역사시간에 전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1996. 10. 23 차 씨)

국민학교 문제도 잘모르겠습니다. 컴퓨터화, 기계화되어 자신감이 없습니다. 지식이 따라주지 못합니다.(1996. 6. 26 0 씨)

직업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인데 기술습득보다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두 달 정도 지나서야 비로서 강의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한 사람들과 같은 기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을 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1996. 7. 3 7 씨)

기초 지식의 부족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일상적인 대화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하여 남한 주민과의 교제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 주민들이 이미 습득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조차 활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취학이나 취업, 그리고 승진과 같은 생계문제와 직결되어 생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

## 다. 심리적응

북한이탈자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남한사회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지니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고려한다면 외면적으로는 심리적인 차원의 사회적응이 잘 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심리적 불안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술을 먹고 싸운 적은 없었습니다. 성격이 온순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순 이후에 불안하고 신경이 예민해지다 보니, 술을 먹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괜한 시비를 붙어 싸우고 경찰서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같은 경우 경찰서에 가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1996. 9. 30. 0 씨)

경찰이 동행하는 기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대우를 잘해 주어서 모든 것이 다 잘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보호기간이 끝나면 완전히 망막하게 내던져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외롭습니다.(1996. 10. 31. ㅈ 씨)

학교 동아리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고, 사고방식에서도 차이가 많습니다.(1996. 7. 1. ㅈ 씨)

1989년에 귀순한 ㅈ 씨의 경우 남한에 온지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50% 정도 남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이탈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같이 귀순한 친구들이 동네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려서 곤란한 경험이 있었다고 이야기한 면접대상자도 많았다.

남한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으로 직장동료나 이웃주민을 꼽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정부나 사회단체의 사람과 북한에

서 같이 이탈한 사람들을 뽑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은 북한이탈자들이 남한사회의 일차집단(primary group)에 소속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차원의 적응에 비해서 심리적인 적응은 북한이탈 주민들의 배경변수에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삶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의 12.5%가 자신없다고 응답한 반면, 무직자는 26.7%가 자신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도 무직자는 31.3%가 불만인 반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25.0%가 불만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개인적 능력에 대해서는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의 37.5%가 자신없다고 응답한 반면, 무직자는 12.5%만이 자신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수가 적은 까닭으로 이 결과를 일반화시키기는 힘들지만, 남한의 사회생활에 참여할수록 이들의 개인적인 좌절감과 회의감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특히 북한이탈 주민들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비판적인 시각 때문에 북한이탈 주민들은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북한이탈 주민들은 '남한국민들은 귀순자들을 2등국민이나 열등국민으로 취급'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고향을 물을 때 귀순자라고 하면 태도가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다(1996. 5. 15 송의동지회 간부들과 대담). 남한 사람들의 비판적인 시각은 결혼과 같은 일상생활로부터 직장생활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하는 과정에서 처가집의 반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1996. 10. 24 0 씨)

현재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내가 북한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북한출신이라는 이유로 사귀던 아가씨 집에서 결혼을 반대해서 헤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1996. 7. 9. 0 씨)

강릉지역에 공비가 왔을 때, 회사동료가 “친구가 왔는데 만나보러가지 않느냐”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농담으로 했겠지만 저는 굉장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상사가 저를 불러서 물어보곤 합니다. 여전히 북한사람으로 취급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1996. 11. 17 씨)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보는 것이 싫어서 그냥 중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멸적인 태도를 보이더군요.(1996. 11. 10 씨)

남한 사람들이 ‘가족을 두고 온 사람’이라고 배척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족을 버리고 왔겠습니까?(1996. 7. 1 초 씨)

회사에 근무할 때 사람들은 “한번 배반한 사람은 자꾸 배반한다”고 비판적이었습니다.(1996. 7. 10 씨)

북한이탈 주민들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모멸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은 북한이탈 주민들이 남한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비록 제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이탈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개선되었고, 북한이탈 주민 스스로가 적응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그들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완전한 사회적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궁극적으로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이탈 주민들은 남한으로 귀순한 이후 한국 정부가 이들에 대해 차별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또 다른 유형의 심리적

박탈감을 겪고 있다. 최근 귀순한 북한이탈 주민들은 귀순시기에 따라 다른 법률체계가 적용된 결과, 귀순시기별로 상이한 보상이 제공된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지니고 있다. 상이한 결과 보상의 차별이 가해진 것도 적지 않은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큰 불만요인은 북한에서의 지위와 배경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로금이 제공되고 사회적 대우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특히 남한사회에서 보상을 잘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북한의 기득권층이고, 결국 그들은 북한의 억압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북한에서 잘살던 사람들이 남한에서도 대우를 잘받고 있어요. 귀순 당시 외화를 가져온 사람도 있는데, 그 돈이 다 북한 주민들의 것을 훔친 것이나 같습니다. 북한의 고위층은 다 북한 주민들을 착취한 사람들인데 그들에 대한 남한 정부의 대우가 훨씬 좋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북한고위층 출신 귀순자들에 복수를 하려는 북한 주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1996. 7. 8. 7 씨)

차별적인 보상기준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이것이 남한체제 전반에 대한 불만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또한 북한이탈자들은 심리적응과정에서 심리적 지지를 해줄 사람이나 집단이 부족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들의 어려운 일을 같이 해결해 줄 사람이나, 고민을 들어 줄 사람과 같은 비공식적인 관계구조가 결여되어 있음으로써 적응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다. 앞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이 경찰의 보호를

한편으로는 귀찮아 하면서도 보호기간이 끝나면 막막함을 느끼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기인한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집주인이 잘 보살펴 주어서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잘해주는 것보다 중요한 한 명이 이해하고 보살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1996. 11. 10 씨)

인맥이나 연고가 없는 것이 사회생활하는 데 가장 큰 문제입니다.(1996. 10. 30 0 씨 )

## 제 V 장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 지원방안

북한이탈 주민의 남한사회적응은 복잡한 재사회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 주민의 재사회화과정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회에 이주하게 된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재사회화과정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이탈 주민들은 이념과 체제가 다르면서도 동일한 민족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반세기 동안 생활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적응은 일반적인 문화적 적응이나 사회적 적응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 주민들의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이들이 남한사회의 규범 및 가치관을 수용하는 동화과정과 기존 남한사회가 이들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포용 및 조절과정이 동시병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은 북한이탈자의 개인적인 적응문제일 뿐만 아니라 남한사회가 이들에게 적응해가는 쌍방향적인 적응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자의 수적 증가와 유형별 다양화로 인해 이들에 대한 남한사회의 인식 및 대책이 변화하고 있는 점은 이들의 사회적응문제가 가입자와 수용자 양측의 상호작용의 문제라는 것을 입증한다.<sup>1)</sup>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경제적 차원에서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조건의 보장이 필요하

1) 이장호, “남한이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체계적 접근,” 크리스찬 아카데미 남북관계 대화모임, 「탈북자 지원을 위한 대책과 과제」, 1996. 9. 20, pp. 6~7.

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자의 사회적응은 남한사회의 기본적인 이념과 가치체계를 수용하고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한편, 심리적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복잡한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법적·제도적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북한이탈자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탈자들의 심리적응을 위해 사회복지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 1. 법적·제도적 보완방안

1996년 제정된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법률을 보완하여 북한이탈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에 주안점을 두으로써 이들의 자생력인 생활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자들의 효과적인 사회적응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

첫째, 통일원이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며, 업무의 성격상 정책결정뿐만 아니라 정책집행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일원 산하에 「기획단」과 같은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또는 북한이탈자의 정착문제를 전담하도록 되어있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이 기구에 의결과 집행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북한이탈자의 보호관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통일원이 보호시설의 총괄책임을 지더라도 사회복지단체나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실질적인 관리·운영을 책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특히 직업훈련은 북한이탈자들이 남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정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과 재원 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민간단체 대표와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단체들은 북한이탈자들의 사회참여도와 소속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자들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분담 및 행정협조를 할 수 있는 세부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자가 각 거주지에 정착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와의 협조하에 지역 사회복지관과 기타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북한이탈자의 지역사회정착 및 심리적응을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2)</sup>

여섯째, 북한이탈자들의 사회정착을 위해서 사회보장제도의 성

2) 이종훈, "탈북 북한 주민 체제적응 현황과 과제,"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민족통일연구소·해외민족연구소 공동 주최 통일정책 대토론회, 1996. 11. 1; 이종훈, "탈북자 지원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통일한국』 (1996. 12), pp. 30~32.

격을 지닌 각종 지원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주택융자, 실업연금, 학자금 융자, 한시적인 조세감면 등과 같은 각종 사회복지제도를 적용하여 북한이탈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일시적인 지원금 제공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 2. 사회적응교육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정착을 위해서 주거의 안정이나 생계유지와 같은 물질적 조건이 완비되는 것이 필요조건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완전한 사회정착은 북한이탈 주민들이 한국사회의 문화체제를 수용하고 이념과 가치체계 및 규범을 내면화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의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북한이탈 주민이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 및 규범체제를 내면화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북한이탈 주민이 통일 지향적인 문화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북한이탈 주민들은 북한사회주의체제가 싫어서 북한을 이탈하였지만,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체제의 기본적 규범과 가치에 익숙해져 있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영향력도 잔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가 체제이념으로 삼고 있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이해하여야 하며,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이념이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

능가를 알아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탈자들의 한국사회정착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한국이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진행해 온 과정을 이해해야 하며, 그 동안의 사회발전 결과 확립된 한국사회의 생활관습 및 규범윤리의 실체를 정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의 체제이념, 한국사회의 변화과정, 그리고 생활관습 및 규범 등을 단기간에 완전하게 습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이들이 정착과정에서 겪을 혼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산업시찰(72.5%)이나 백화점 및 시장견학(92.5%)을 제외하고 다른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조사대상자의 비율은 대단히 낮았다. 산업시찰이나 견학이 교육이라기보다는 일회성 행사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사회적응교육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직업교육의 경험 비율은 5.6%에 불과하고, 교육경험자 가운데 실제로 교육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람이 과반수였다는 점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안보교육도 상대적으로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차원에서 북한이탈자들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

&lt;표 25&gt; 각종 교육경험

	교육여부		매우 도움	다소 도움	별도움 안됨	전혀 도움 이 안된다
	교육 받았음	교육안 받았음				
남한정치 현실에 대한 교육	27.5	72.5	10.0	10.0	7.5	0
안보교육	25.6	74.4	7.9	10.5	5.3	0
남한경제 현황에 대한 교육	43.9	56.1	17.5	17.5	7.5	0
산업시찰	72.5	27.5	41.0	23.1	5.1	2.6
백화점 및 시장견학	92.5	7.5	44.7	26.3	15.8	5.3
직업훈련	5.6	94.4	0	2.8	2.8	0

교육효과는 교육경험자를 대상으로한 비율임.

#### 가. 목표 및 기본 방향

사회적응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는 전체주의적이고 획일적인 북한식 사고를 극복하고, 한국사회의 다원적인 가치관과 민주주의 규범을 습득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응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통일한국의 이념 및 가치관을 내면화 하여 통일문화공동체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이 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목표하에 남한사

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에 대한 올바른 인식, 민주적 정치행위에 대한 훈련 등이 세부적인 교육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응교육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사회적응교육은 북한이탈 주민들이 능동적인 주체성을 확립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sup>3)</sup> 특히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서 전체주의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에 익숙해 있고, 상황에 대한 피동적인 대처를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이탈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이탈 주민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교육대상자들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각 집단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목표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집단유형별로 교육내용, 교수방법, 교육의 주안점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교육대상자의 사회적 속성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적응교육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안보교육과 같은, 즉 북한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이념적인 차원의 교육은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

3) 기존의 북한탈출주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응과정에서 본인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영수·정영국, 「탈북귀순자 남한사회적응실태 조사」(서울: 통일연수원, 1996), p. 88.

들이 정착한 거주지를 중심으로 각종 사회교육기관이 추가적인 적응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적인 적응교육 프로그램은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추가적인 적응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문화회관, 각 대학이나 언론기관의 평생교육기관이 고려될 수 있으며, 민간분야의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로는 해당 과목의 전문가와 남한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용한 귀순자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라. 교육 내용

### (1) 교과과정

- ① 공동교육(1개월): 북한이탈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적인 정치교육과 역사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 ② 학교교육: 해당학교 수준에서 남북한 교과과정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남한의 교과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 ③ 보호시설 내의 교육 1: 성인들을 중심으로 경제교육과 사회교육을 실시하며, 다른 북한 이탈자의 경험 및 사례를 소개한다.
- ④ 보호시설 내의 교육 2: 학생들을 중심으로 사회단체의 협조를 얻어 다양한 과외활동을 실시한다.

⑤ 개인 상담: 보호시설별로 상담원을 배치하여 교과과정에서 이해 못한 부분을 보충하며, 개인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한다.

⑥ 방송 교육: 유선방송망을 활용하여 각종 교양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 (2) 교과내용

① 역사교육: 남북한 역사인식의 차이점, 분단 이후 남한사회의 변화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정치교육: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 통일한국의 정치이념, 민주시민의 권리 및 의무, 민주적 선거의 의미와 절차, 평화적인 국제관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 경제교육: 자본주의의 원리, 시장경제의 특징, 한국 자본주의의 특성 등 경제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함께 저축과 소비, 조세제도, 금융제도, 벌금제도, 부동산제도, 주식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제지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④ 사회교육: 취업구조, 한국사회의 의식주 생활, 보험 및 사회복지 정책, 한국 문화의 특성, 교육제도, 컴퓨터와 통신, 교통문제, 여행 및 레저, 언론 및 방송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⑤ 법률교육: 한국의 헌법과 법체계, 경제관련법, 민법관련 사항,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교통법규, 재산세 및 소득세법, 부동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⑥ 일상생활교육: 대인관계, 예절, 직장생활, 친척관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자본주의체제의 시장원리에 대한 교과서적인 교육보다는 남한의 시장에서 물건값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과 같이 실생활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사회의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알려줌으로써 한국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북한이탈 주민들이 한국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서 겪게 되는 부작용을 해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나. 교육 주체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교육은 가칭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위원회’가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위원회’에는 통일원, 보건복지부, 안기부 등의 정부기관과 지방단치단체 및 지방교육청, 언론기관, 적십자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교육위원회’는 사회적응교육의 내용과 교육과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교육시행과정에서는 각 지역 교육청이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사회적응교육을 주관하도록 한다. 북한이탈 주민 가운데 학생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가 별도의 프로그램에 입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시설 내에서의 교육은 지방 교육청이 직접 담당하도록 한다. 보호시설 외에서의 적응교육은 각종 사회교육 단체에 위임

하고 지방 교육청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호시설 내에서의 교육프로그램중 현장 교육이나 단체 활동은 각종 사회단체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 다. 교육 방법

사회적응교육은 교육대상자들의 사회적 속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대상자들을 일차적으로 학교교육 대상자와 학교교육 대상자가 아닌 자로 구분하되, 학교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인들의 경우는 북한에서의 직업을 고려하여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 그리고 취업을 원하지 않는 전업주부 집단으로 분류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교육내용은 교육대상의 성격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와 특정 교육대상 집단에 필요한 교육으로 나누어서 편성해야 할 것이다.

성인대상 교육은 보호시설 단위로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방법으로는 일방적인 강연뿐만 아니라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호시설 내에서 방영을 원칙으로 하고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유선방송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교육내용에 따라 교육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호시설 내에서의 교육이 완료된 후에 북한이탈 주민

### 3.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북한이탈자들이 남한사회의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이탈자 대책이 보조금 인상보다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을 통한 자생력확보에 두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한이탈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직업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북한이탈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들이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중 과반수가 넘는(57.5%) 조사대상자들이 정부대책 가운데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조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22.5%), 다음으로 귀순자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15.0%). 그리고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7.5%), 의식주 등 일상생활교육(2.5%), 과잉보호 중지(2.5%), 강연회 축소(2.5) 등에 대해서는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표 26> 남한 정부의 대책에 대한 요망사항

	비 율
① 의식주 등 일상생활 교육	2.5
②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7.5
③ 직업훈련 교육 및 직업알선	57.5
④ 과잉보호 중지	2.5
⑤ 강연회 축소	2.5
⑥ 귀순자에 대한 호의적 태도	15.0
⑦ 보조금 인상	22.5
⑧ 기타	12.5

※누락: 3

### 가. 목표 및 기본 방향

북한이탈 주민들의 사회적 정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안정된 소득원을 확보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1980년대까지의 귀순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정착금을 제공하고 직장을 알선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이탈자에 대한 정착금의 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직업 알선도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탈자들은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이탈자에 대한 기존의 취업알선은 일종의 시혜적 차원에서<sup>4)</sup> 이루어진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직업교육을 통하여 취업을 위한 각 개인의 실질적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이를 토대로 직장을 알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직업교육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북한이탈 주민의 적성과 희망 직종이 일치적으로 중시되어야 한다. 북한이탈 주민들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본인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직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탈

4) 1962년에 제정된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및 1979년에 제정된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에 따르면 귀순자를 포함하여 귀순자의 가족까지 원하는 경우 정부가 취업을 책임졌다. 그리고 1993년에 개정된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에서는 귀순자 본인에 한해 취업을 알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귀순자들에 대한 취업은 민간기업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 취업한 귀순자들 중에는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 임금만 수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주민들의 학력, 자격증 소유여부, 전직, 기술의 습득여부 등 직업 선택과 관련된 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직업교육이 취업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인력수급구조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현황과 민간기업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직업교육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한간 정치·경제체제의 차이로 인해 남북한간 근로조건도 판이하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직업에서 필요한 기술교육 이외에 산업현장에서 남북한 노동자간에 발생가능한 갈등을 예방하는 교육도 필요하다.<sup>5)</sup> 그런데 북한이탈자들이 남한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각종 개념과 기술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부문도 많지만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연유하는 어려움도 많다. 따라서 직업교육과정에서는 남한에서의 노동규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업무처리과정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직업교육도 사회적응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사회적응프로그램과 직업교육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 직업교육의 방법 및 내용

---

5) 북한이탈자들이 남한의 작업현장에서 겪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선한승, 「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995).

북한이탈자에 대한 직업교육은 통일원 주관하에 교육부, 노동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가칭 '북한이탈주민 직업교육 및 취업위원회'를 설립하여 이 위원회가 제반 사항들을 결정하고 교육과정 및 취업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 위원회가 북한이탈자들에 대한 직업교육과정을 총괄하되, 실질적인 직업교육과정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들은 ① 직업훈련 참여자의 취업능력에 대한 사전평가, ② 취업 장애요인의 제거, ③ 취업계획의 진행, ④ 취업계획의 허가, ⑤ 직업훈련 참가자에게 임무부여, ⑥ 직업훈련 참여자의 진척상황 관리, ⑦ 사후검토, ⑧ 필요한 보고서, 편지, 전화질문의 완성 등의 업무를 통해 북한이탈자들의 직업훈련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sup>6)</sup>

그리고 직업교육은 ① 직업능력 평가--적성검사 및 기능평가, ② 직업기술 훈련--직업훈련원에서 실시, ③ 직업적응 훈련--보호작업장에서 실시, ④ 현직 훈련--연수생 및 인턴사원, ⑤ 사후적응 지도--전직 지도 등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sup>7)</sup>

한편, 북한이탈자들에 대한 직업교육은 ① 북한에서 전문직종에

6) 이만식, "탈북 북한 주민 체제적응 현황과 과제,"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민족통일연구소·해외민족연구소 공동주최 통일정책 대토론회, 1996. 11. 1.

7) 김동배, "탈북자들의 적응을 위한 민간차원의 대책,"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주최 탈북자 대책을 위한 대토론회, 「탈북자들의 남한생활 적응을 위한 대책」, 1996, p. 15.

종사하였거나 일정한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②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③ 단순직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등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전문직 출신이거나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관리하는 기관과 단체에서 심사하여 소정의 자격을 부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화력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확인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학위를 수여하고, 기술 및 자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유관단체의 협조하에 북한이탈 주민들이 보유한 기술에 합당한 자격증을 교부하면 된다. 만일 남북한 산업구조나 사회체제의 상이성으로 인해 북한의 기술이나 자격증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면 담당부서가 주관하고 유관단체가 실시하는 보충교육을 통하여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전문직 경험자나 기술 및 자격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는 기초적인 소양교육 차원에서 직업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을 위한 기초 소양교육은 한국 기업조직의 특성, 일반적인 노사관계, 임금과 세무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보호시설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종에 따라 보완 교육이 필요한 경우는 유관 단체나 기관이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하고, 교육비용은 정부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둘째, 새로운 기술 습득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직업훈련 과정을 보호시설 내에 설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호시설 내의 직업교육으로 충분하지 않은 업종은 별도의 심화과정을 설치

하여 추가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업교육의 교과목은 ‘교육 및 취업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기초 자격증을 획득하는 것을 각 과정의 목표로 한다. 과목별 교육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술교육기관<sup>8)</sup>이 선별적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책임지도록 한다. 교육실습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기술교육기관의 시설을 임차하도록 한다.

셋째, 단순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력을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하여 해당 업체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 따라서 단순직을 희망하는 집단에게 별도의 직업교육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업체가 북한이탈자들을 연수생 또는 인턴사원으로 채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체교육과 실습기간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장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재교육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sup>9)</sup>

#### 다. 취업알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 ‘교육 및 취업위원회’는 취업을 책임지도록 한다. ‘교육 및 취업위원회’는 보호시설 내의 거주기간이 만료된 후 직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자들의 자격 및 경력, 희망업종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또

8) 공업고등학교나 전문대학교 같은 기술관련 학교나, 기술관련 학원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9) 이종훈, “남한이주 북한동포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정비방향,” 「현안분석」, 제119호(국회입법조사분석실, 1996. 4), p. 18.

한 '교육 및 취업위원회'는 채용을 희망하는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직과 구인을 조절한다. 취업이 결정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거주지가 결정된 이후 해당 자치단체에 취업 알선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농협의 협조를 얻어 일정한 경작지를 알선하도록 한다.

그리고 북한이탈자들이 희망업종을 선정하여 취업에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직장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취업위원회가 1회에 한정하여 취업을 알선할 것이 아니라 3회 정도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각 개인에게 알맞은 직장을 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4. 심리적응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북한이탈 주민들은 자아정체성 및 신분정체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남북한간 문화적 차이, 생활정보 획득의 어려움, 남한 사람들과의 접촉기회의 제한, 직장생활에서의 소외감, 본인들의 열등감 등으로 인해 폐쇄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또한 자아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역할, 미래 등에 대해서 확실한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신분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남한 사람」도 「북한 사람」도 아닌 중립적인 존재인 「한국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소외감과 자아정체성 및 신분정체성의 미확립으로 말미암아 북한이탈자들은 남한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동화되

지 못한 채 주변부적 존재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귀순한 사람들은 새로운 공동체에 적응하기까지 상당기간 동안 심리적인 불안정을 겪는다. 한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자들은 대체로 5단계에 걸쳐 ① 이질문화 충격 단계--방황기(공포, 허탈감 등), ② 기초취업 준비 단계--갈등기(회의, 동조-반발 등), ③ 생활정착 단계--적응기(수용, 타협 등), ④ 재사회화 단계--동화기(순응, 협조 등), ⑤ 문화 사회적 통합단계--안정기(융화, 소속감 등)의 심리적응 과정을 겪는다고 한다.<sup>10)</sup> 이처럼 북한이탈자들은 각 단계별로 상이한 심리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별 상이성을 고려한 심리적응 대책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자들의 심리적 불안정 상태는 사회적응교육이나 취업으로만 해소될 수 없다. 또한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는 개인적 성향이나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정도와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단적 차원의 문제해결도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 주민들이 한국사회의 공동체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가 필요하다.<sup>11)</sup> 새로운 지역에 정

10) 이장호, “남한이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체계적 접근,” pp. 4~7; 북한이탈자들의 사회적응 과정을 심리적 갈등기(1-3개월), 직업훈련기(6-12개월), 사회적 적응기(6-12개월), 사회적 통합기(6-12개월)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 김동배, “탈북자들의 적응을 위한 민간차원의 대책,” pp. 13~14.

11) 사회적 지지는 ① 정서적 관심(호의, 사랑, 연민), ② 수단적 도움(재화, 용역), ③ 주위환경에 대한 정보, ④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의 내용을 내포하는 대인적 행위라고 정의될 수 있다. J. S. House, *Work*

착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편입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며, 새로 정착한 지역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아정체성(self-identity)을 확립할 때, 비로소 진정한 정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 주민들이 새로운 자아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지원이나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아울러 기존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 지지망을 구성하여 북한이탈자들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탈 주민들의 심리적응을 위해서 민간단체와 사회적 유대망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sup>12)</sup> 북한이탈자들이 쉽게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단체는 종교단체이다. 종교단체들은 종교적 소속감으로 인해 안정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소속원들간의 교류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북한이탈자들의 사회정착을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종교단체 간 불필요한 경쟁이나 북한이탈자들을 선교대상자로 설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대가로 종교를 강요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권단체와 사회봉사단체, 대학의 평생교육원, 청소년 대화의 광장 등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북한이탈자들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이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sup>13)</sup>

---

*Stress and Social Support* (M.A.: Addison-Wesley, 1981) 참조.

- 12) 현재 북한이탈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로는 귀순북한동포후원회, 북한탈출동포돕기 운동본부, 개신교의 북한선교회 3곳, 극동방송, 불교방송 등이 있다.
- 13) 전우택·민성길, “북한귀순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주최 탈북자 대책을 위한 대토론회, 「탈북자들의 남한생활 적응을 위한 대책」, 1996, pp. 24~25.

민간단체의 역할 외에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북한이탈자들의 사회적응 및 심리상담을 위한 상설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에는 청소년문제와 노인문제 등을 상담하는 312개의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상담소시설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북한이탈자 문제를 전담하는 새로운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

북한이탈 주민들에 대한 개별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는 사회복지부가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복지 계획은 전반적인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취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각종 학교와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이탈 주민들의 거주지 경찰과도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봉사 활동과 관련된 각종 사회단체들이 사회복지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별적인 사회복지 지원은 보호시설 내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 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한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적응교육이나 직업교육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 주민들에 대한 개별적인 사회복지 사업은 두 가지 단계의 추진이 요구된다.

첫째, 전문 사회사업가를 중심으로 훈련된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보호시설 내에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이 상담소는 북한이탈자들의 개인적인 애로사항과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에 응하고 자문한다. 상담소 근무자들은 이들을 찾아오는 북한이탈 주민들을 수동적으로 상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개인별로

담당할 수 있는 북한이탈 주민들을 할당하여 각자 담당한 북한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상을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이들의 문제를 파악하려고 하는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호시설에서의 생활기간이 만료되어 정착지가 확보될 때에는 해당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이 북한이탈 주민들의 개별적인 문제들을 상담해야 할 것이다. 보호시설 내에서의 각종 상담 기록은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사업가에게 인계되어야 할 것이다.<sup>14)</sup>

보호시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사회복지관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각 개인별로 할당된 북한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상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각종 지역 사회단체와 북한이탈 주민들을 연계시켜 북한이탈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역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탈 주민들이 궁극적으로 각종 사회단체에 가입하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사업가나 자원봉사자들에게 북한이탈 주민들을 할당하는 것은 가구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가족단위의 관찰과 상담을 하는 것이 각 개인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개인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현재 전국에는 312여 개의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며, 각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전문사회사업가가 7~8명씩 근무하고 있다. 도별 지역 사회복지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 89, 부산 41, 대구 19, 인천 11, 광주 16, 대전 15, 경기 29, 강원 10, 충북 9, 충남 10, 전북 17, 전남 11, 경북 16, 경남 16, 제주 3.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캠프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과외활동, 그리고 주부 대상의 여가활동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한편 북한이탈자들중 일부는 극단 「오마니」를 창단하여 1996년 8.15 광복기념으로 「아버지의 땅」이라는 연극을 공연하였다. 이것은 북한이탈자들의 사회적응과 내면적 심리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연극이라는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점을 표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북한이탈자들이 남한사회에서 문화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이를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북한이탈자들의 사회활동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이들의 심리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제VI장 결 론

다른 사회체제에 적응하는 문제는 새로운 환경과 이주자 개인 간의 복잡한 상호과정이다. 작게는 한 나라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람과 크게는 다른 나라에 이주하는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북한이탈 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문제는 비록 언어와 문화에 있어서 동질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것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에 이주하여 적응하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남북한이 동일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50여 년에 걸친 대립과 경쟁으로 인해 남북한간 이질화와 적대감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북한이탈자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나라에 적응하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동일한 민족이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과 동일한 대접을 받기를 기대하는 북한이탈자들의 기대감도 이들의 좌절감을 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이탈자들은 체제적응과 생활적응, 심리적응면에서 각각 다른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체제적응에 대해서는 비교적 순조로운 적응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일상생활 면에서의 적응에 대해서는 남북한간 제도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남한사회의 가치관과 이념, 정치·경제제도 등을 완전히 이해하고 이러한 체제와 이념에 대해서 일체감을 느끼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것은 북한체제에서 생활

한 관습과 행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기 힘들며, 더구나 외면적으로는 잘 표출되지 않은 채, 잠재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심리적 불안과 고독감이다. 이러한 심리적응문제는 북한이탈자가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직장과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한 뒤에도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북한이탈자들의 사회적응과정은 시간적으로 일종의 사이클을 그린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자들이 남한사회에 도착한 초기에는 막연한 기대와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북한이탈자들은 한편으로는 남한사회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불안감을 지니고 있다. 보호기간이 끝난 후 남한사회와 직접 부딪히게 된 귀순자는 그때서야 비로소 혼자서 낯설은 남한사회에서 모든 문제를 일일이 해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심한 좌절감과 심리적 불안감을 맛보게 된다. 이들은 기대와 현실간의 간격을 느끼고 자신이 과거를 되돌아보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후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적응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또는 주기적으로 남한사회에서의 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좌절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북한이탈자들의 사회적응문제는 일차적으로 북한이탈자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이탈자들의 사회적응문제는 남한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정 출신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사회의

부적응자로 방치되고 사회적 불안요인이 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이탈자들의 남한 사회적응은 통일후 남북한의 주민통합과정에서 부딪히게 될 문제를 미리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이탈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는 북한이탈자들의 사회적응보다는 이들을 통한 북한정세파악 및 안보적 이유에 근거한 이들의 별도관리에 주안점을 두어왔기 때문에 북한이탈자들의 사회적응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자들을 이념적·안보적 이유에서 특별 보호·관리대상으로 취급하기보다는 다른 체제 속에서 생활해 온 사람들을 남한이라는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응하도록 유도하는 데 강조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자에 대한 관련 법을 개정하여 이들에 대한 특혜부여보다는 체제적응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 이들의 자생력확보에 주안점이 두어진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적 차원의 대책과 함께 다양한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북한이탈자들이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인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한 국민들이 북한이탈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이들을 국외자로 취급함으로써 북한이탈자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남한 주민들에 대한 통일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남한 주민들은 북한이탈자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오랫동안 이질적인 사회에서 생

활해 온 사람이라는 차원에서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고, 남한사회의 안정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거시적 차원에서 이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영수·정영국. 「탈북귀순자 남한사회적응실태 조사」. 서울: 통일연수원, 1996.
- 민병천. 「월남귀순자의 자유사회적응과정 실태조사」. 서울: 통일원, 1980.
- 선한승. 「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995.
- \_\_\_\_\_. 「북한 탈북 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995.
- 이정우·김형수. 「탈북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주독대사관. 「서독의 동독인 수용·지원정책」. 1990.
- \_\_\_\_\_. 「과거 동서독 국경을 통한 탈출·이주문제」. 1993.
- 통일원.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사회통제」. 서울: 통일원, 1994.
- 통일연수원. 「탈북 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 서울: 통일연수원, 1996.
- House, J. S.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 Addison-Wesley, 1981.
- Ronge, Volker. *Von drüben nach hüben DDR-Bürger im Westen*. Verlag 84 Hartmann + Pefit Wuppertal 1985.
-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Information zur politischen

Bildung - Aussiedler - Franzis - Verlag GmbH 1991. Bonn.

Dieter Voigt und Lothar Mertens, ed., Minderheiten in und  
Übersieller aus der DDR, Schriftenreihe der Gesellschaft für  
Deutschland Forschung Band 34. Duncker & Humbolt. 1992,  
Berlin.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Familie,  
Frauen und Gesundheit, Bayerische Sozialpolitik München, 1993.

## 2. 논문

고태우. “월남귀순자 현장 경험사례.” 강광식 외. 「통일후유증 극복방안 연구: 민족사회적 가치체계의 융화」.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김동배. “탈북자들의 적응을 위한 민간차원의 대책.”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주최 탈북자 대책을 위한 대토론회. 「탈북자들의 남한생활 적응을 위한 대책」, 1996.

민성길·전우택. “사람의 통일: 정신의학적 접근.” 「통일사회로 가는 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원기념 심포지움 논문집, 1995.

배규한. “통일이후 남북한의 사회통합.”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재미한인교수협의회·동북아문화연구원 주최 광복 50주년 기념 한·미국제학술회의. 「통일이후 남북한의 사회적 통합」, 1995. 11. 2.

송의호. “귀순자들의 내면세계, 그리고 남한사회 수업.” 「월간 중

양」(1995. 1).

윤여상. “남한의 귀순동포에 대한 정책연구.” 「영남정치학회보」, 제5호 (1995. 12).

이만식. “탈북 북한 주민 체제적응 현황과 과제.”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민족통일연구소·해외민족연구소 공동주최 통일정책 대토론회, 1996. 11. 1.

이장호. “남한이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체계적 접근.” 크리스찬 아카데미 남북관계 대화모임. 「탈북자 지원을 위한 대책과 과제」, 1996. 9. 20.

이종훈. “남한이주 북한동포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정비방향.” 「현안분석」, 제119호. 국회입법조사분석실, 1996. 4.

\_\_\_\_\_. “탈북 북한 주민 체제적응 현황과 과제.”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민족통일연구소·해외민족연구소 공동주최 통일정책 대토론회, 1996. 11. 1.

\_\_\_\_\_. “탈북자 지원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통일한국」(1996. 12).

전우택·민성길. “북한귀순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주최 탈북자 대책을 위한 대토론회. 「탈북자들의 남한생활 적응을 위한 대책」, 1996.

제성호. “북한귀순자 보호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7권 1호 (1996 봄).

### 3. 기 타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시행령」.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승의동지회 회장 오선석 및 부회장 김용철 면담내용.

# <부 록>

빈 면

## 북한귀순자의 사회적응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면접일:

--	--	--

안녕하십니까?

민족통일연구원은 국가의 통일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통일정책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하는 한편, 통일과정 및 통일후에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귀순자들은 남북한의 체제의 차이, 생활관습의 차이, 남한주민들의 선입견, 정부대책의 미비함 등으로 인해 남한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북한귀순자들이 남한사회의 일원으로 민족감을 지니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순자들의 순조로운 사회 정착은 우선 귀순자 개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룩한 뒤, 남북한 주민들이 한데 어울려서 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귀순자들이 남한사회에 순조롭게 정착하는 것은 통일후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저희는 북한귀순자들의 남한사회적응 실태와 애로사항에 대한 귀순자들의 견해를 있는 그대로 청취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불기밀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응답자와 비밀이 보장되며 응답결과는 통계처리됩니다. 그리고 응답결과는 순조롭게 연구목적에만 사용되며, 기타 어떤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북한귀순자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다같이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본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설문에 대해 응답하실때 다음 사항들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저희가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이나 느낌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  를 표시해 주십시오.
2. 특별히 지시사항이 없으면  표시해 주십시오.

1996년 6월

민족통일연구원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산 5-19  
(전화: 232-4726, 232-4727)

다음 문항은 남한사회의 실상에 대해서 귀하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1. 다음 중 귀하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아는대로 표시해 주십시오.

- \_\_\_\_\_ ① 대통령제
- \_\_\_\_\_ ② 감사원
- \_\_\_\_\_ ③ 지방자치제
- \_\_\_\_\_ ④ 가정법원
- \_\_\_\_\_ ⑤ 4.19
- \_\_\_\_\_ ⑥ 조 순
- \_\_\_\_\_ ⑦ 지역구
- \_\_\_\_\_ ⑧ 12.12와 5.18
- \_\_\_\_\_ ⑨ 자민련
- \_\_\_\_\_ ⑩ 최규하

2. 다음 중 귀하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표시해 주십시오.

- \_\_\_\_\_ ① 바겐세일
- \_\_\_\_\_ ② 주식투자
- \_\_\_\_\_ ③ 보험
- \_\_\_\_\_ ④ 농협
- \_\_\_\_\_ ⑤ 중소기업
- \_\_\_\_\_ ⑥ 국세청
- \_\_\_\_\_ ⑦ 할부구매
- \_\_\_\_\_ ⑧ 사채
- \_\_\_\_\_ ⑨ 신용카드
- \_\_\_\_\_ ⑩ 토큰

3. 다음 중 귀하가 아는 사항에 대해서 아는대로 표시해 주십시오.

- \_\_\_\_\_ ① 노래방
- \_\_\_\_\_ ② 에이즈
- \_\_\_\_\_ ③ 안성기
- \_\_\_\_\_ ④ 황영조
- \_\_\_\_\_ ⑤ 비디오
- \_\_\_\_\_ ⑥ 속셈학원
- \_\_\_\_\_ ⑦ 앵커맨
- \_\_\_\_\_ ⑧ 우등고속
- \_\_\_\_\_ ⑨ 해태 타이거즈
- \_\_\_\_\_ ⑩ 의료보험카드

다음 문항은 남한사회에 대한 귀하의 참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4. 귀하는 선거때마다 투표를 하셨습니까?

- \_\_\_\_\_ ① 반드시 했다.
- \_\_\_\_\_ ② 가끔 했다.
- \_\_\_\_\_ ③ 한번도 안했다.
- \_\_\_\_\_ ④ 선거때 투표권이 없었다.

5. 귀하는 각종 사회단체나 친목단체에 참여하시고 있습니까?

- \_\_\_\_\_ ① 3개이상의 단체에 참여하고 있다.
- \_\_\_\_\_ ② 1-2개의 단체에 참여하고 있다.
- \_\_\_\_\_ ③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없다.

6. 귀하는 이웃돕기 성금이나 수재민 돕기 성금과 같은 각종 성금을 내본 경험이 있습니까?

\_\_\_\_\_ ① 3번이상

\_\_\_\_\_ ② 1-2번

\_\_\_\_\_ ③ 없다.

다음 문항은 남한사회에 대한 귀하의 평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7. 귀하는 「남한사회는 땀흘린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이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전적으로 동의한다.

\_\_\_\_\_ ② 대체로 동의한다.

\_\_\_\_\_ ③ 대체로 반대한다.

\_\_\_\_\_ ④ 전적으로 반대한다.

8. 귀하는 남한사회의 빈부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매우 심하다고 생각한다.

\_\_\_\_\_ ② 다소 심하다고 생각한다.

\_\_\_\_\_ ③ 별로 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_\_\_\_\_ ④ 전혀 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9. 귀하의 경험으로 볼 때 다음 사항에 있어서 북한 사람에 비해 남한 사람들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나음	다소 나음	비슷함	다소 못함	매우 못함
부지런함					
창 의 력					
교 육 열					
질서의식					
직업만족도					
애 국 심					
집단에 대한 소 속 감					
가족유대감					
협 동 심					

10. 귀하가 보시기에 통일을 위해 남한사회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개인의 자유신장  
 \_\_\_\_\_ ② 경제적 발전  
 \_\_\_\_\_ ③ 사회질서의 확립  
 \_\_\_\_\_ ④ 빈부격차 해결  
 \_\_\_\_\_ ⑤ 도덕성 회복  
 \_\_\_\_\_ ⑥ 서로 돕고 나누는 자세·공동체 의식  
 \_\_\_\_\_ ⑦기타(무엇: )

11. 귀하가 생각하는 **남북한의 장단점**을 각각 하나씩 써주십시오.

	장 점	단 점
남한사회		
북한사회		

다음 문항은 남한사회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12. 귀하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에 대해서 어느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 \_\_\_\_\_ ① 매우 자신있다.  
 \_\_\_\_\_ ② 다소 자신있다.  
 \_\_\_\_\_ ③ 다소 자신없다.  
 \_\_\_\_\_ ④ 매우 자신없다.

13. 귀하는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 \_\_\_\_\_ ① 있다.  
 \_\_\_\_\_ ② 없다.

14. 귀하는 남한에서의 삶에 자신이 있습니까?

- \_\_\_\_\_ ① 확실히 자신이 있다.  
 \_\_\_\_\_ ②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_\_\_\_\_ ③ 별로 자신이 없다.  
 \_\_\_\_\_ ④ 전혀 자신이 없다.

15. 귀하는 현재 남한사회의 생활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 \_\_\_\_\_ ① 매우 만족한다.  
 \_\_\_\_\_ ② 다소 만족한다.  
 \_\_\_\_\_ ③ 다소 만족하지 못한다.  
 \_\_\_\_\_ ④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

16. 귀하는 북한에서의 생활과 비교해서 남한으로 귀순한후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대우에서 어느정도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나아졌다	다소 나아졌다	별차이 없다	다소 나빠졌다	매우 나빠졌다
경제적 여유					
사회적 대우					

17. 귀하는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해서 어느정도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매우어렵다	조금어렵다	별로 어렵지않다	전혀 어렵지않다
재산 모으기				
취업				
자녀 교육				
결혼				
직장 생활				
남한주민과 의 융화				
언어 습관				





22. 귀하의 남한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 \_\_\_\_\_ ① 직장동료  
 \_\_\_\_\_ ② 이웃주민  
 \_\_\_\_\_ ③ 정부·사회단체 사람  
 \_\_\_\_\_ ④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들  
 \_\_\_\_\_ ⑤ 가까이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_\_\_\_\_ ⑥ 기타(누구: \_\_\_\_\_ )

23. 귀하는 귀순후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습니까?

- \_\_\_\_\_ ① 정부의 교육  
 \_\_\_\_\_ ② 신문·방송  
 \_\_\_\_\_ ③ 직장 및 학교 동료  
 \_\_\_\_\_ ④ 이웃사람  
 \_\_\_\_\_ ⑤ 이전에 귀순한 동료  
 \_\_\_\_\_ ⑥ 기타( \_\_\_\_\_ )

24. 귀하는 남한주민과 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_\_\_\_\_ ① 매우 자주 있다.

\_\_\_\_\_ ② 가끔 있다.

\_\_\_\_\_ ③ 별로 없다.

\_\_\_\_\_ ④ 전혀 없다.

25. (앞의 13번 질문에서 ① ②에 대답한 분만 해당됩니다) 남한 주민과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언어의 차이

\_\_\_\_\_ ② 사고방식의 차이

\_\_\_\_\_ ③ 생활관습의 차이

\_\_\_\_\_ ④ 기타(무엇: \_\_\_\_\_ )

다음 문항은 귀순자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태도 및 정부정책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26. 귀하가 귀순하기 전 남한사회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_\_\_\_\_ ① 자유로운 삶

\_\_\_\_\_ ② 물질적 풍요

\_\_\_\_\_ ③ 자신의 능력 발휘

\_\_\_\_\_ ④ 새로운 교육의 기회

\_\_\_\_\_ ⑤ 기타(무엇: \_\_\_\_\_ )

27. 귀하는 귀순자들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태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호의적이다.
- \_\_\_\_\_ ② 동정적이다.
- \_\_\_\_\_ ③ 좋게도 나쁘게도 보지 않는다.
- \_\_\_\_\_ ④ 냉담하다.
- \_\_\_\_\_ ⑤ 적대적이고 멸시적이다.

28. 귀하는 귀순이후 남한에서 받은 다음과 같은 교육들이 남한에서 생활하는 데 어느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에  표를 하십시오.

	교육여부		매우 도움	다소 도움	별도움 안 됨	전혀도움이 안 된 다
	교육받 았음	교육안 받았음				
남한정치현실 에 대한 교육						
안보교육						
남한경제현황 에 대한 교육						
산업시찰						
백화점 및 시장견학						
직업훈련						

29. 귀하는 귀순자들에 대한 남한정부의 대책이 어떤 면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의식주 등 일상생활 교육  
 \_\_\_\_\_ ②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_\_\_\_\_ ③ 직업훈련 교육 및 직업알선  
 \_\_\_\_\_ ④ 과잉보호 중지  
 \_\_\_\_\_ ⑤ 강연회 축소  
 \_\_\_\_\_ ⑥ 귀순자에 대한 호의적 태도  
 \_\_\_\_\_ ⑦ 보조금 인상  
 \_\_\_\_\_ ⑧ 기타(무엇: )

다음 문항은 귀하의 개인적 배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단지 통계분석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이로 인해 귀하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 귀하의 성별은?

- \_\_\_\_\_ ① 남  
 \_\_\_\_\_ ② 여

31. 귀하는 언제 귀순하셨습니까?                      년       월

32. 귀하는 북한에서 당원이었습니까?

- \_\_\_\_\_ ① 당원이었다.  
 \_\_\_\_\_ ② 아니다.  
 \_\_\_\_\_ ③ 가족 중에 당원이 있었다.

33. 귀하의 결혼 연부는?

- \_\_\_\_\_ ① 가족귀순  
 \_\_\_\_\_ ② 북한에서 결혼후 남한에서 재혼  
 \_\_\_\_\_ ③ 북한에서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혼자  
 \_\_\_\_\_ ④ 남한에서 결혼  
 \_\_\_\_\_ ⑤ 남한에서 이혼후 재혼  
 \_\_\_\_\_ ⑥ 남한에서 이혼후 독신  
 \_\_\_\_\_ ⑦ 미혼

34. 귀하의 가족수는?

- (1) 북한: 조부모( ), 부모( ), 처( ), 자녀( ):계( )몇명  
 (2) 남한: 처( ), 자녀( ) :계( )몇명

35. 귀하는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북한:  
 (2) 남한:

36. 귀하의 귀순방법은?

- \_\_\_\_\_ ① 남파간첩  
 \_\_\_\_\_ ② 휴전선 통과  
 \_\_\_\_\_ ③ 중국 경유  
 \_\_\_\_\_ ④ 러시아 경유  
 \_\_\_\_\_ ⑤ 동구권 유학 중  
 \_\_\_\_\_ ⑥ 제3국을 통한 입국  
 \_\_\_\_\_ ⑦ 기타(무엇: )

37. 귀하의 출생지와 출생년도는?

- (1) 출생지( )  
 (2) 출생년도( )

38. 귀하의 북한에서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다?( )

39. 현재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40. 귀하나 귀댁의 수입원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_\_\_\_\_ ① 봉급  
 \_\_\_\_\_ ② 강연비  
 \_\_\_\_\_ ③ 각종 보조금  
 \_\_\_\_\_ ④ 도서 인세  
 \_\_\_\_\_ ⑤ 기타(무엇: )



(단위: 명)

## 1. 응답자의 성별

① 남	40
② 여	1

## 2. 귀순시기

① 1979년	1
② 1980년	1
③ 1981년	1
④ 1987년	2
⑤ 1988년	1
⑥ 1989년	1
⑦ 1990년	1
⑧ 1991년	1
⑨ 1993년	5
⑩ 1994년	12
⑪ 1995년	9
⑫ 1996년	6

## 3. 북한에서의 당원여부

① 당원이었다.	17
② 아니다.	5
③ 가족 중에 당원이 있었다.	19

## 4. 결혼여부

① 가족귀순	6
② 북한에서 결혼후 남한에서 재혼	2
③ 북한에서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혼자	13
④ 남한에서 결혼	7
⑤ 남한에서 이혼후 재혼	0
⑥ 남한에서 이혼후 독신	0
⑦ 미혼	13

## 5. 최종학력

북한		남한	
① 고졸	15	① 전문대졸	1
② 대재	2	② 대재	8
③ 대졸	20	③ 대졸	8
④ 대퇴	2	④ 대졸이상	1
⑤ 기타	1	⑤ 기타	1

※누락: 1

※누락: 22

## 6. 귀순방법

① 남파간첩	0
② 휴전선 통과	4
③ 중국 경유	18
④ 러시아 경유	8
⑤ 동구권 유학 중	0
⑥ 제3국을 통한 입국	7
⑦ 기타	1
⑧ ③, ⑥항목을 선택한 경우	2

## 7. 출생지

① 황해도	8
② 평안도	13
③ 함경도	10
④ 양강도	3
⑤ 차강도	2
⑥ 강원도	1
⑦ 기타	2

※누락: 2

## 8. 출생년도

① 1934년	1
② 1946년	2
③ 1947년	1
④ 1950년	1
⑤ 1956년	1
⑥ 1957년	2
⑦ 1958년	1
⑧ 1959년	2
⑨ 1960년	2
⑩ 1961년	5
⑪ 1962년	3
⑫ 1963년	3
⑬ 1964년	2
⑭ 1965년	2
⑮ 1966년	2
1967년	2
1968년	4
1969년	1
1971년	1
1975년	1

\*누락: 2

## 9. 북한에서의 직업

① 학생	3
② 노동자	12
③ 인테리	2
④ 군인	11
⑤ 공무원	6
⑥ 무역	3
⑦ 기타	1

※누락: 3

## 10. 남한에서의 직업

① 학생	2
② 직장인(사무직+기술직)	20
③ 자영업	2
④ 군인	1
⑤ 무직	16

## 11. 수입원

① 봉급	20
② 강연비	22
③ 각종 보조금	8
④ 도서 인세	6
⑤ 기타	11

## 12. 평균 총수입

① 50만원 미만	4
② 50만원~100만원 미만	2
③ 100만원~200만원 미만	13
④ 200만원~300만원 미만	4
⑤ 300만원~500만원 미만	3
⑥ 700만원~1000만원 미만	1
⑦ 3000만원 이상	3

※누락: 11

## 13. 종교

① 개신교	17
② 불교	0
③ 천주교	2
④ 없음	13
⑤ 기타	3

※누락: 6

## 14. 해외생활 경험 유무

① 있다.	25
② 없다.	3

※누락: 13

## 15. 해외생활 경험 기간

① 1년 이하	7
② 2년 이하	3
③ 3년 이하	0
④ 4년 이하	2
⑤ 5년 이하	2
⑥ 7년 이하	1
⑦ 10년 이하	0
⑧ 10년 초과	2

※누락: 24

## 16. 정착금의 총액

① 1000만원 미만	1
② 1000-2000만원 미만	7
③ 2000-3000만원 미만	6
④ 3000-4000만원 미만	4
⑤ 4000-5000만원 미만	2
⑥ 5000-6000만원 미만	5
⑦ 6000-7000만원 미만	1
⑧ 8000-9000만원 미만	1
⑨ 1억원 이상	1

※누락: 13

## ◎ 發刊資料目錄 案內 ◎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문화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政勢 展望
-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問題
-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對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  
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을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北韓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과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 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모색-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金正日 體制下的 軍部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III): 「근로자」 해제
- 95-21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연구
-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 95-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 96-06 북한의 대 주변4국 군사관계
-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향 연구
- 96-10 통일과정에서의 민간단체의 역할
-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 96-15 통일과정에서 정당역할 연구
- 96-16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
-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진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現況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大會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 96-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 96-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회의 結果分析을 中心으로
- 96-03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 96-04 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 96-05 러시아 大選結果 分析
- 96-06 金日成 死後2年: 北韓政勢의 動向 및 展望
- 96-07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 96-08 일본총선 결과분석
- 96-09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 &lt;世界主要事件日誌&gt;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96-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1. 1 ~ 1996. 3. 31)  
 96-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4. 1 ~ 1996. 6. 30)  
 96-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7. 1 ~ 1996.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95-0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5~1996

<論 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統一研究論叢 第5卷 1號(1996. 7)

統一研究論叢 第5卷 2號(1996.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1996)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  
(1994)

<資 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 95-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追錄I)
-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I)

<통일문화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 95-01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上)
- 95-02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下)

---

---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研究報告書 96-18

---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232-4726, FAX: 231-4304  
印刷處 한라인쇄 전화: 277-5308  
印刷日 1996년 12월 일  
發行日 1996년 12월 일

---

---